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5년 상주시 경상북도종합감사 —

2025. 7.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기타	금액										
계			21건	13	8	3	158,106	9	1,475,915	1	56,632									
1	▽	▽	▽	인사운영 부적정	-	1	-	-	-	-	-									
2	▽	▽	▽	공무원 교육훈련(상시학습) 업무처리 부적정	-	1	-	-	-	-	-									
3	▽	▽	▽	근무성적평정업무 처리 부적정	-	1	-	-	-	-	-									
4	★	★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소홀	1	-	-	-	-	1	56,632									
5	◇	◇	◇	◇	◇	◇	◇	◇	◇	◇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원상복구 미이행 부적정	-	1	-	-	-	-	-	
6	♠	♠	♠	♠	♠	♠	♠	♠	♠	♠	♠	택시 외부광고 검사 부적정 등	-	1	-	-	-	-	-	
7	♣	♣	♣	♣	♣	♣	♣	♣	♣	♣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	1	-	-	-	-	-	-	
8	▲	▲	▲	▲	▲	▲	▲	▲	▲	▲	▲	대형 건축물 등의 저수조 및 급수관 위생상의 조치 등 지도·감독 부적정	-	1	-	-	-	-	-	
9	⊖	⊖	⊖	⊖	⊖	⊖	⊖	⊖	⊖	⊖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업무 처리 부적정	-	1	-	-	-	-	-	
10	▲	▲	▲	▲	▲	▲	▲	▲	▲	▲	▲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추진 부적정	1	-	-	-	1	197,168	-	-
11	▼	▼	▼	▼	▼	▼	▼	▼	▼	▼	▼	설치공사추진 부적정	1	-	-	-	1	172,915	-	-
12	☉	☉	☉	☉	☉	☉	☉	☉	☉	☉	☉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1	-	-	-	1	5,510	-	-
13	▽	▽	▽	▽	▽	▽	▽	▽	▽	▽	▽	상주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1	-	-	-	1	41,080	-	-
14	☾	☾	☾	☾	☾	☾	☾	☾	☾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	1	2,652	1	107,647	-	-
15	▼	▼	▼	▼	▼	▼	▼	▼	▼	▼	▼	상주시 관리대행 추진 부적정	1	-	1	145,935	-	-	-	-
16	▼	▼	▼	▼	▼	▼	▼	▼	▼	▼	▼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	1	9,519	1	480,822	-	-
17	☾	☾	☾	☾	☾	☾	☾	☾	☾	☾	☾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교량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	-	-	1	73,208	-	-
18	◇	◇	◇	◇	◇	◇	◇	◇	◇	◇	◇	동 공원 보행육교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	1	-	-	-	-	-	-
19	▶	▶	▶	▶	▶	▶	▶	▶	▶	▶	▶	상주 천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1	-	-	-	1	391,411	-	-
20	☆	☆	☆	☆	☆	☆	☆	☆	☆	☆	☆	상주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1	-	-	-	1	6,154	-	-
21	◆	◆	◆	◆	◆	◆	◆	◆	◆	◆	◆	상주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1	-	-	-	-	-	-	-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인사운영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상주시에서는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였다.

1. 5급 특별승진임용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에 따르면 재직기간 중 중징계처분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등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등과 관련된 사유로 경징계 및 그에 따른 징계부가금 처분 받은 사실이 없고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의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명예퇴직대상자 중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결을 통해 특별승진임용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상자의 자격요건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특별승진임용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상주시 ▽▽▽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24. 6. 4. 개최한 명예퇴직자 퇴직수당지급 및 특별승진 심의·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2022. 1. 7. 자체 공직기강 특별감찰 결과 예산횡령 등으로 경징계 및 그에 따른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은 **6급 \$\$\$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대상자가 될 수가 없음에도 재직 중 특별한 문제없이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하였다는 사유로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 대상자에 포함시켜 2024. 6. 30. **6급에서 **5급으로 특별승진 임용되도록 하였다.

[표 1] **6급 \$\$\$ 징계의결 및 특별승진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인사위원회	안 건	인사위원회 결과 등		비고
		대상자	의결내용	
2022. 1. 3.	출장비 부당수급 (예산횡령) 공무원 징계 심의	**6급 \$\$\$	- 경징계 (견책), 2022. 1. 7 - 징계부가금1배(170,000원)	감경제외
2024. 6. 4.	명예퇴직자 퇴직수당지급 및 특별승진 심의·의결	**6급 \$\$\$	- 특별승진임용(**6→**5) - 명예퇴직수당(38,025,600원)	

그 결과 예산횡령 등으로 인한 경징계 및 그에 따른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아 특별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6급 \$\$\$가 **5급으로 특별승진임용 되었다.

2. 6급 승진요인 책정 부적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시·군·구의 경우 본청 및 의회사무국·사무과 등을 포함하는 정원관리기관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 가능하나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 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5조 및 「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르면 및 상주시의회 사무직원의 정원은 4급 1명, 5급 2명, 6급 7명, 7급 10명, 8급 8명, 9급 3명 등 총 31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2022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3. 전보’편의 ‘질문과 답변’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집행부에서 의회로 이동하는 것은 인사권 독립 전(2022. 1. 12.)까지는 ‘동일 기관 내 전보’에 해당하고, 인사권 독립 시행 시점(2022. 1. 13.)부터는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의6,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의 전출 동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전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15호 서식을 따르고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는 별지 제16호 서식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본청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례 등을 통해 관리하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022. 1. 13부터 시행) 시점부터는 집행부 ↔ 의회로의 이동은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전·출입 등을 통해 처리하고 집행부 및 의회 등 해당 소속기관 내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는 등 인사권을 분리하여 공정한 승진임용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상주시 ∇∇∇에는 아래 [표 2]와 같이 의회 독립시점부터 계속 상주시 의회소속으로 근무 중인 \$\$\$가 2023. 10. 25. 상주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 5급 승진 대상자로 사전의결 되어 2024. 1. 1 **5급으로 승진임용 되었고, 2023. 12. 21. 상주시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집행부소속 **6급 1명의 상주시의회 전출을 동의 처리한

상태로 집행부소속 **6급 1자리에 대한 결원발생 요인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6급 1명에 대한 결원을 승진요인으로 책정하지 않고 **5급 \$\$\$의 승진후속을 집행부 **6급 승진요인으로 책정하여 2023. 12. 21. 상주시 인사위원회에서 **6급 1명이 승진 의결 되도록 하였다.

[표 2] 의회소속 직원 승진후속에 따른 집행부 직원 후속 승진 현황

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진임용 현황		인사요인 및 내용		비고
기 관	일자	대상자 및 인원	인사요인 및 내용	
상주시 의회	2023. 10. 25. (인사위원회)	**5급 1명	\$\$\$(**6급) 사전의결	
상주시 의회	2024. 1. 1. (승진임용)	**5급 1명	\$\$\$(**5급) 승진임용	상주시 의회 전문위원
상주시	2023. 12. 21. (인사위원회)	**6급 1명	승진후속 등	\$\$\$(**5급) 승진후속 책정
상주시	2024. 1. 1. (승진임용)	**6급 1명	**6급 1명 승진임용	**6급 1명, 기관을 달리하는 직원간 후속승진 임용

그 결과 지방자치법 개정(2021. 1. 12)으로 확보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022. 1. 13부터 시행)이 훼손되었으며, 이로 인해 승진할 수 없었던 집행부 소속 **6급 1명이 승진임용 되었다.

3. 보건소장 직무대리 부적정

구 「지역보건법 시행령」(2024. 7. 3. 대통령령 제3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와 보건복지부 00000000-*****(****, **, **) 및 경상북도 00000000-*****(****, **, **)의 “보건소장 임용 관련 안내”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선행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 등”이라 한다)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24. 7. 3. 개정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와 보건복지부 ㉠㉠㉠㉠-*****(****. *. *)호 및 경상북도 ㉠㉠㉠㉠-*****(****. *. *)의 “지역 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른 보건소장 임용 관련 안내”에 따르면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도 임용 가능 하나 각 지자체에서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선행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며 행정직 공무원은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 임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한편,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개방형직위의 충원을 위하여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험시행계획을 수립 후 10일 이상 공고하되, 응시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59조 내지 164조에 따르면 직무대리를 지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서로 지정하여 운영가능하나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하며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래 담당할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상주시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역보건법에 맞게 의사 면허가 있는 기술서기관을 임용하되, 의사면허가 있는 기술

서기관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를 통해 의사면허가 있는 자를 공개 모집 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야만 하고, 만약 공개모집에 따른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건 등 직렬에 해당하는 내부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의사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채용 절차 등 실질적인 노력 등을 하지 않은 채 2023. 2. 2. **5급 \$\$\$을 보건소장으로 직무대리 명하였고, 2024. 1. 1 보건소장 직무대리와 관련해서는 당시 **5급 \$\$\$ 등 보건직렬 공무원이 3명이 재직 중에 있었음에도 지정할 수 없는 **5급 \$\$\$을 보건소장으로 직무대리 지정하였고, 2024. 7. 3.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시점 이후에는 의사면허보유자를 대상으로 공개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지만 지원자가 없다는 사유로 당시 **5급 \$\$\$ 등 보건직렬 공무원 3명이 재직중에 있었음에도 보건직렬 공무원을 직무대리 지정하지 않고 또 다시 지정할 수 없는 **5급 \$\$\$을 보건소장으로 직무대리 임명하였다.

[표 3]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정 현황

직무대리 지정일	공개채용 진행여부	직무대리자 (직무대리 기간)	당시 보건직렬 재직현황
2023. 2. 22.	미실시	**5급 \$\$\$ 2023. 2. 22. ~ 2023. 12. 31.	**5급 \$\$\$ 등 3명
2024. 1. 1.	미실시	**5급 \$\$\$ 2024. 1. 1. ~ 2024. 12. 31.	**5급 \$\$\$ 등 3명 (공로연수자 제외)
2025. 1. 1.	실시	**5급 \$\$\$ 2025. 1. 1. ~ 2025. 12. 31.	**5급 \$\$\$ 등 3명

그 결과 의사면허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채용절차 등이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히 2024.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는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없는 **5급이 직무대리자로 지정되어 지역보건법을 위반하게 되었다.

4.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6급·7급·8급·9급의 정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와 있어야 하며 근속승진기간(7급 11년 이상, 8급 7년 이상, 9급 5년6개월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 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7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일반승진 적격자임에도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하여 정기 및 수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승진심의 등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렬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대상자가 단기간 내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상주시 ▽▽▽에서는 7급 근속승진과 관련하여 아래 [표 4]와 같이 2022. 8. 16.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 7급 2명 결원에 따른 심의자료를 작성하면서 ** 8→7급 승진후보자명부 1번 \$\$\$의 비고란에 “근속대상”이라 표시하여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상기자료를 바탕으로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를 일반승진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킨 후, 곧바로 근속승진심의를 개최하여 승진후보자명부 1번 \$\$\$를 **7급으로 근속승진 임용하였다.

또한, 6급 근속승진과 관련하여 2023. 12. 21 인사위원회에서 **6급 1명 결원에 따른 일반승진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 7→6급 승진후보자명부 1번 \$\$\$의 경우 “근속승진심의·의결대상자”로 향후 근속승진심의회에서도 검토가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심사에서 제외시킨 후 6급으로 근속승진임용 하는 등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대상자가 단기간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시키고 6급으로 근속승진임용 하였다.

[표 4] 7급 및 6급 근속승진 부적정

일반승진 현황				승진 임용일	근속승진 현황				승진 임용일	비고
인사위원회 심의일	승진요인	승진자	명부 순위		인사위원회 심의일	승진요인	승진자	명부 순위		
'22.8.16.	**7급 2명	**7급 \$\$\$	3위	'22.8.18.	'22.8.16.	**7급 1명	**7급 \$\$\$	1위	'22.8.18.	
		**7급 \$\$\$	4위							
'23.6.15.	**6급 1명	**6급 \$\$\$	2위	'23.7.1.	'23.6.15.	**6급 1명	**6급 \$\$\$	1위	'23.7.1.	
'23.12.21.	**6급 1명	**6급 \$\$\$	3위	'24.1.1.	'23.12.21.	**6급 1명	**6급 \$\$\$	1위	'24.1.1.	
'24.6.10.	**6급 1명	**6급 \$\$\$	2위	'24.7.1.	'24.6.10.	**6급 1명	**6급 \$\$\$	1위	'24.7.1.	

그 결과 승진임용 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거나, 장기 근속자가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에서 제외하지 않았을 경우 승진할 수 없었던 **7급 1명, **6급 2명, **6급 1명이 승진임용 되었다.

5. 승진임용기준 등 변경 시행에 따른 승진임용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 대상이 되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 질의응답·답변원문」에 게재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관련 문의’(2024.01.29)에 대해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에서는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는 연1회 실시할 수 있으며, 직렬별로 심의일자를 달리 운영할 수 있으나 승진심사 일정은 소속 기관 인력관리 계획 등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승진임용기준 등 세부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들에게 예고한 후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상주시에서는 2023. 2. 9. 인사위원회에서 6급 근속승진 운영 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 매년 상반기 인사위원회 개최시점에 근속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을 산정 후 그에 따른 승진가능인원을 확정하여 직렬 구분 없이 연1회 6급 근속승진 제도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 대상이 되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기준을 적용해야만 하며 6급 근속승진 심의 일정 변경 등에 대해서는 기준일에 따라 재직기간이 산정되는 관계로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심의 일정 등에 대한 변경이 있었다면 적용시점을 1년 이후로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상주시 ▽▽▽에서는 아래 [표 5]와 같이 2023. 2. 9. 인사위원회에서 (기존)상반기 직렬구분 없이 연1회 근속승진심의운영에서 (변경)상·하반기 직렬별 연1회 근속승진심의운영으로 변경하는 “6급 근속승진 운영 계획 심의·의결”건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에도 적용시점을 1년 이후부터 적용하지 않고 곧바로 2023. 6. 15. 인사위원회 개최 시점에 근속승진에 따른 재직기간을 산정하고 대상 인원을 확정 후 6급 근속승진심의를 개최하여 **7급 \$\$\$ 등 5명을 6급으로 근속 승진 임용하였다.

[표 5] 6급 근속승진 운영 현황

인사위원회	주요안건	주요내용	비고
• 2022. 1. 5 (2022년 상반기)	• 6급 근속승진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급 근속승진의결 (6명) - **급 \$\$\$, \$\$\$, \$\$\$ - **7급 \$\$\$ - **7급 \$\$\$ - **7급 \$\$\$ 	
• 2022. 12. 22 (2023년 상반기)	• 6급 근속승진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급 근속승진의결 (1명) - **7급 \$\$\$ 	
• 2023. 2. 9	• 6급 근속승진 운영 계획 심의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상반기 직렬구분없이 연1회 운영 • (변경) 상하반기 직렬별 연1회 운영 	
• 2023. 6. 15	• 6급 근속승진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급 근속승진의결 (5명) - **7급 \$\$\$, \$\$\$ - **7급 \$\$\$ - **7급 \$\$\$ - **7급 \$\$\$ 	2024년 상반기 심의대상

그 결과 6급 근속승진 운영계획 변경 적용 시점을 1년 이후로 하였다면 근속승진 임용될 수 없었던 **7급 \$\$\$ 등 5명이 6급으로 근속승진 임용되었다.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②, ③ 병합), BBB(② 병합), CCC, DDD는 **훈계** 처분하시고,
- ③ 관련자 EEE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무원 교육훈련(상시학습)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상주시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상시학습 제도 운영,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1.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실적 반영 부적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2024. 5. 28. 행정안전부예규 제287호의 ‘II.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편에 따르면 2022. 3. 1. 이후 승진 심사 시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였던 기초지자체의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이수실적(년간 7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집합교육 이수시간을 폐지 또는 조정하지 않은 경우 상기 자율화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집합교육 이수와 관련해서는 지침개정이후에도 (중증)장애인 공무원 교육, 교육훈련기관 미운영 등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토록 운영할 수 있으며, 인정시간 부여 등은 해당 기관의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상주시에서는 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2024. 5. 28. 행정

안전부예규 제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22. 3. 1.이후 승진심사 시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였던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이수시간(년간 7시간)과 관련하여 지침개정 이후에도 폐지 또는 조정하지 않고 계속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승진심사 시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이수시간 (년간7시간) 계속 의무 적용에 따라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집합교육 실적여부를 확인하여 미이수자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승진심사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교육훈련기관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님에도 단순히 집합교육을 미이수 하였다는 사유로 별도의 자체적인 인정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사이버교육을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이수실적으로 변경입력 후 집합교육 이수자로 표현하여 실제 제외대상자를 승진임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상주시 ▽▽▽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22년 3회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7급→6급) 등 11명, 2023년 4회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7급→6급) 등 22명, 2024년 4회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7급→6급) 등 14명을 포함 총 47명의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교육훈련기관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미이수의 경우 승진심사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체적인 인정 기준 없이 단순히 집합교육이 이수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사이버교육을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이수실적으로 변경입력 후 \$\$\$ 등 47명을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이수자로 표현하여 승진임용 되도록 하였다.

[표 1] 3년간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미이수자 승진임용 현황

연번	년도 (심사횟수)	승진 직급 및 인원 직급승진 내역	교육훈련(상시학습) 실적 현황		
			대상자별 집합교육 필요시간	사이버교육을 집합교육으로 변경	집합교육 미인정 시 이수시간 [정당시간]
합계		**7→6급 \$\$\$ 등 47명			
1	2022 (3회)	**7→6급 \$\$\$ 등 11명	5시간 ~ 12시간	1시간 ~ 12시간	11명 모두 미이수 (0시간 ~ 9시간)
2	2023 (4회)	**7→6급 \$\$\$ 등 22명	1시간 ~ 19시간	3시간 ~ 17시간	22명 모두 미이수 (0시간 ~ 14시간)
3	2024 (4회)	**7→6급 \$\$\$ 등 14명	4시간 ~ 28시간	7시간 ~ 29시간	14명 모두 미이수 (0시간 ~ 18시간)

* 상주시 확인 및 제출자료 재구성 (세부내역 별첨)

그 결과 2022. 3. 1 이후 승진심사 시 집합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승진심사에서 제외 되었어야 할 총 47명(7급→6급 6명, 8급→7급 39명, 9급→8급 2명)이 승진임용 되었다.

2. 교육훈련 중복 입력자 승진임용 부적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2024. 5 28. 행정안전부예규 제287호)의 ‘II.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편에 따르면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하되 기관별·직급별 필수 교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법정 의무교육 등으로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과 연구사·지도사 및 일반직의 경우 해당 직급 재직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 3년이 경과한 경우 동일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교육실적 인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동일 연도 내 동일 과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상가지침에 따르면 교육훈련 부서에서는 교육훈련 실적의 적정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오류 및 부정 입력한 경우 교육훈련부서는 즉시 입력 내용을 삭제하고 부정 입력자에 대하여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소속 공무원 대한 교육훈련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관리하여 동일직급에서 3년 이내에 동일과정을 중복으로 이수한 실적 또는 중복 입력한 실적 등을 즉시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적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의 경우 승진심사에서 제외되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 점검·관리 및 적정 조치를 하지 않고 중복 입력(승인)된 교육훈련 실적을 삭제하지 아니하였고, 중복 입력(승인)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삭제하는 경우 승진심사일 기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해서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대상자가 승진임용 되도록 하였다.

[표 2] 교육훈련 중복 입력자 승진임용 현황

연번	승진의결일	승진후보자		총 필요시간	인정시간	중복시간	실 제 인정시간	충족 여부
		직 급	성 명					
1	2023. 4. 26.	**6급→5급	\$\$\$	520시간	538시간	30시간	508시간	부
2	2024. 5. 1.	**6급→5급	\$\$\$	947시간	974시간 15분	38시간	936시간 15분	부
3	2024. 10. 15.	**6급→5급	\$\$\$	600시간	611시간 35분	21시간	590시간 35분	부

* 상주시 확인 및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동일직급에서 동일과정을 중복 입력하여 실질적으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 6급→5급 \$\$\$ 등 3명이 승진심사에서 제외되지 못하고 승진임용되었다.

3.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5급 교육이수실적에 미반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2024. 5 28. 행정안전부예규 제287호)의 'II.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편에 따르면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적용하고 인사교육훈련부서(인사과 등)에서는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실적을 입력하되 승진임용 등의 경우 연간 교육훈련 시간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 5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과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5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인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의 교육 이수 실적은 승진 직급인 5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이와 관련한 해당자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승진임용 등과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연간교육훈련 시간 충족 여부 등을 정확하게 관리하여 승진임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상주시 ▽▽▽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2022. 6. 21. 인사위원회, 2024. 2. 23. 인사위원회, 2024. 12. 20.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4급 승진에 따른 승진심사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대상자들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이수시간을 반영하지 않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이수시간을 산정하여 실제 승진에 필요한 교육 이수시간을 충족한 [2022. 6. 21.인사위원회] **5급 \$\$\$, [2024. 2. 23.인사위원회] **5급 \$\$\$, [2024. 12. 20 인사위원회] **5급 \$\$\$을 승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 체크 후 인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상기 3인을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표 3] 4급 승진임용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현황

인사위원회	승진요인	승진후보자명부		교육이수 현황		비고
		번호	대상자 (5급 승진리더 교육 이수현황)	심사조서 이수여부	실제 충족여부 (집합교육 현황)	
2022. 6. 21	** 4급	1번	** 5급 \$\$\$ (2017.4.17.~2017.5.26. / 100시간)	충족	충족	승진 임용
	1명	2번	** 5급 \$\$\$ (2017.4.17.~2017.5.26./ 100시간)	전체 미충족 (241시간 대비 235시간)	충족 (241시간 대비 335시간)	심사 제외
2024. 2. 23	** 4급	1번	** 5급 \$\$\$ (2018.09.03.~2018.10.12. / 100시간)	충족	충족	
	1명	2번	** 5급 \$\$\$ (2019.10.21.~2019.11.29. / 100시간)	충족	충족	승진 임용
		3번	** 5급 \$\$\$ (2019.10.21.~2019.11.29./ 100시간)	집합 미충족 (21시간 대비 6시간)	충족 (21시간 대비 106시간)	심사 제외
2024. 12. 20	** 4급	1번	** 5급 \$\$\$ (2019.01.07~2019.02.15.100시간)	충족	충족	승진 임용
	2명	2번	** 5급 \$\$\$ (2019.01.07~2019.02.15.100시간)	충족	충족	
		3번	** 5급 \$\$\$ (2019.10.21.~2019.11.29.100시간)	충족	충족	승진 임용
		4번	** 5급 \$\$\$ (2017.11.6.~2017.12.15.100시간)	충족	충족	
		5번	** 5급 \$\$\$ (2019.10.21.~2019.11.29.100시간)	충족	충족	
		6번	** 5급 \$\$\$ (2020.05.25.~2020.06.19.100시간)	충족	충족	
		7번	** 5급 \$\$\$ (2020.05.25.~2020.06.19.100시간)	충족	충족	
		8번	** 5급 \$\$\$ (2020.05.25.~2020.06.19.100시간)	충족	충족	
		9번	** 5급 \$\$\$ (2020.11.16.~2020.12.11.100시간)	충족	충족	
		10번	** 5급 \$\$\$ (2020.11.16.~2020.12.11.100시간)	전체 미충족 (191시간 대비 187시간)	충족 (191시간 대비 287시간)	심사 제외

* 상주시 확인 및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5급 \$\$\$ 등 3명이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이수시간을 충족하였음에도 미충족으로 표현되어 승진심사에서 제외되었다.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㉓ 병합), BBB, CCC는 **혼계** 처분하시고,
- ③ 관련자 DDD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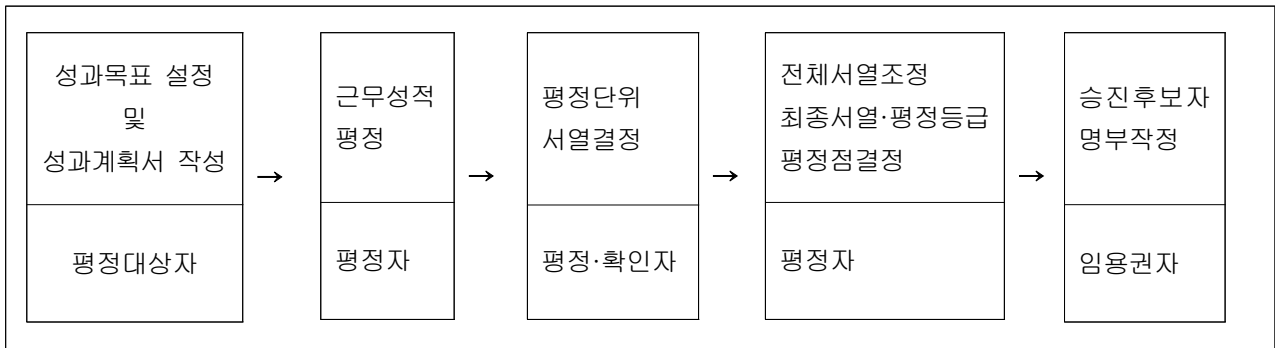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총무과
내 용

상주시에서는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근무성적평정 실시 계획’을 내부결재 받고 근무성적 정기평정 실시계획 공문을 전 부서 및 읍·면·동 등에 통보하여 아래 [표 1]과 같은 절차대로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표 1] 지방공무원 평정절차 (2022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지침)



「지방공무원법」 제76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정기 및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4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에 따르면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두며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

하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하지 않은 채 평정 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는 근무 성적 평정대상자의 순위와 평정점(안)을 작성할 때 제출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대조 확인하여 순위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평정점을 심사 결정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상주시 ▽▽▽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22년 하반기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심의(안)을 작성하면서 평정단위별 제출된 서열명부를 제대로 대조·확인하지 않은 채 ▲▲▲▲국에서 제출한 **6급 서열명부에는 \$\$\$\$(9위), \$\$\$\$(10위) 순으로 작성되어 있었음에도 최종 서열명부에는 \$\$\$\$(37위), \$\$\$\$(40위) 순으로 변경한 후 2022. 11. 30.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2020년 하반기 및 2022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평정단위별 제출된 서열명부의 선순위와 후순위를 변경한 채 근무성적평정점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표 2]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변경한 채 근무성적평정 확정 내역

연번	평정시기	평정단위 기 관	직급 및 직렬	성 명	평정단위 서 열	근무성적평정 결과	
						최종서열	평정점
1	2020년 하반기	▲▲▲▲국	지방**주사	\$\$\$	16	140	39.0
				\$\$\$	17	134	42.0
				\$\$\$	18	137	40.5
2	2022년 하반기	▲▲▲▲국	지방**주사	\$\$\$	9	40	61.9
				\$\$\$	10	37	62.7

그 결과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가 유지되지 아니한 채 근무성적평정점이 심사·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소홀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상주시 ★★★에서는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취득세 부과·징수 소홀

가. 상속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징수 관리 소홀

「지방세법」 제6조에 따르면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써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제7항 및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개시일을 취득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상속 취득세 세원 관리를 위하여 사망자 내역, 상속대상 재산 자료, 주민등록상의 상속대상자 등 과세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대사하고, 상속대상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상속 취득세를 적정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직권 부과하고 징수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상주시 ☞☞면 ☞☞리 등 123필지 재산소유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대상자가 상속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신고·납부 기한이 지났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 등 45명의 상속 취득세 54,298,2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표 1] 상속 취득세 부과대상 명세

(단위 : 원)

피상속인	피상속인번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과세표준	부과세액
계	45건	123필지		1,598,277,027	54,298,270
\$\$\$ 등 45명	*****-***** 등	상주시 ☞☞면 ☞☞리 등	2022 ~ 2024	1,598,277,027	54,298,270

* 상주시 확인 및 제출자료 재구성(세부내역 불임)

나. 자경농민 경작 목적 부동산 매각에 대한 취득세 미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다만,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 받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 등 2명의 자경농민이 상주시 읍읍면 읍읍리 *****번지 등의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 받고,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3건, 1,320,000원 (가산세 미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표 2] 자경농민 유예기간내 매각 추징대상 명세

(단위 : 원)

연번	납세 의무자	납세자번호	과세대상	취득일	매각일	과세표준	추징세액
계	3명	3건	6필지			88,000,000	1,320,000
1	\$\$\$	*****-*****	(토지) 읍읍면 읍읍리 *****번지 외 1필지	20240807	20250310	30,000,000	450,000
2	\$\$\$	*****-*****	(토지) 읍읍면 읍읍리 *****번지 외 1필지	20250225	20250310	30,000,000	450,000
3	\$\$\$	*****-*****	(토지) 읍읍면 읍읍리 ***-번지 외 1필지	20240310	20250204	28,000,000	420,000

* 상주시 확인 및 제출자료 재구성

다. 귀농인 경작 목적 부동산 매각에 대한 취득세 미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에 따르면 귀농인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읍·면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 종사 또는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귀농인 \$\$\$가 2022. 11. 22일 상주시 읍읍면 읍읍리 ***번지의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 직접 경작에 따른 취득세를 경감 받고, 귀농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24. 4. 20일 매각함에 따라 경감 받은 취득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215,000원(가산세 미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표 3] 귀농인 유예기간 내 매각 추징대상 명세

(단위 : 원)

납세 의무자	납세자번호	과세대상	취득일	추징사유	과세표준	추징세액
\$\$\$	*****-*****	(토지) 읍읍면 읍읍리 ***번지	20221122	3년내 매각 (2024.4.20.)	14,333,334	215,000

* 상주시 확인 및 제출자료 재구성

라. 농어촌 주택개량자 상시 미거주에 대한 취득세 등 미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280만원 한도)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가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4]와 같이 2023. 2. 1일 \$\$\$이 농어촌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동 ***-*번지 건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528,580원(가산세 미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표 4] 농어촌 주택개량자 상시 미거주 추정대상 명세

(단위 : 원)

납세의무자	납세자번호	과세대상	취득일	추징사유	과세표준	추징세액
\$\$\$	*****-*****	(건물) 읍동 ***-*번지	20230201	상시거주요건 미충족	37,756,140	528,580

* 상주시 확인 및 제출자료 재구성

2. 체육시설업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소홀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르면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별표 1]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체육시설업 면허를 취득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5]와 같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 당구장 \$\$\$ 등 3명에 대해 매년 부과하여야 할 체육시설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3건, 270,000원(가산세 없음)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 5] 체육시설업 등록면허세 미부과 내역

연번	업 종	납세자	상 호 명	등록면허세(원)					비고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3명	3건	270,000	67,500	67,500	67,500	67,500	
1	당구장업	\$\$\$	\$\$\$\$\$	90,000	22,500	22,500	22,500	22,500	
2	체력단련장업	\$\$\$	\$\$\$\$\$\$	90,000	22,500	22,500	22,500	22,500	
3	체육도장업	\$\$\$	\$\$\$ \$\$ \$\$\$	90,000	22,500	22,500	22,500	22,500	

* 상주시 확인 및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열악한 상주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징수되어야 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총 53건, 56,631,850원이 세원의 발굴과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부과·징수가 누락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56,631,850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붙임]

상속 취득세 부과대상 명세

(단위 : 원)

연번	피상속인	피상속인번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과세표준	부과세액
계	45건		123필지		1,598,277,027	54,298,270
1	\$\$\$	*****-*****	충북면 충곡리 산*** 외 1	2022-01-07	3,756,660	139,260
2	\$\$\$	*****-*****	충북면 충곡리 *** 외 1	2022-04-30	2,889,777	88,630
3	\$\$\$	*****-*****	충북면 충곡리 *** 외 1	2022-02-14	27,775,800	987,820
4	\$\$\$	*****-*****	충북면 충곡리 ** 외 3	2022-02-12	17,999,711	665,800
5	\$\$\$	*****-*****	충북면 충곡 ***	2022-08-25	890,240	30,730
6	\$\$\$	*****-*****	충북면 충곡리 ***	2022-09-16	35,604,000	1,223,790
7	\$\$\$	*****-*****	충북면 충곡리 ***번지(토지+건물)	2022-12-27	21,956,000	915,920
8	\$\$\$	*****-*****	충북면 충곡리 ***-* 외 2	2023-02-06	4,498,380	185,620
9	\$\$\$	*****-*****	충북면 충곡리 *** 외 1	2023-05-20	2,287,890	92,990
10	\$\$\$	*****-*****	충북면 충곡리 *** 외 1	2023-05-14	11,537,290	386,630
11	\$\$\$	*****-*****	충북면 충곡리 ***	2023-01-11	13,419,900	452,030
12	\$\$\$	*****-*****	충북면 충곡리 산**	2023-02-21	11,510,496	475,030
13	\$\$\$	*****-*****	충북면 충곡리 ***-**	2023-03-05	19,603,790	804,720
14	\$\$\$	*****-*****	충북면 충곡리 ***-* 외 4	2023-01-31	7,958,160	253,730
15	\$\$\$	*****-*****	충북면 충곡리 ***-* 외 2	2023-04-20	25,991,010	862,010
16	\$\$\$	*****-*****	충북면 충곡리 ***-* 외 2	2023-04-05	24,520,200	1,001,880
17	\$\$\$	*****-*****	충북면 충곡리 *** 외 4	2023-04-14	49,654,820	1,958,760
18	\$\$\$	*****-*****	충북면 충곡리 ***-* 외 1	2023-05-12	17,700,000	719,530
19	\$\$\$	*****-*****	충북면 충곡리 **	2023-12-30	9,075,840	288,520
20	\$\$\$	*****-*****	충북면 충곡리 ***-* 외 1	2023-11-23	35,134,000	1,154,590
21	\$\$\$	*****-*****	충북면 충곡리 *** 외 2	2023-11-05	7,296,095	282,650
22	\$\$\$	*****-*****	충북면 충곡리 ***-* 외 12	2023-11-15	184,241,300	6,807,140

연번	피상속인	피상속인번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과세표준	부과세액
23	\$\$\$	*****-*****	읍면 읍리 *** 외 1	2023-10-17	9,631,710	309,550
24	\$\$\$	*****-*****	읍면 읍리 산**	2023-07-16	17,533,076	705,220
25	\$\$\$	*****-*****	읍면 읍리 산** 외 1	2023-07-10	27,997,047	1,126,090
26	\$\$\$	*****-*****	읍동 산**-*	2023-10-11	68,677,280	2,719,480
27	\$\$\$	*****-*****	읍면 읍리 ***-*	2023-07-03	9,680,000	389,340
28	\$\$\$	*****-*****	읍면 읍리 ***-*	2023-09-08	7,520,000	299,270
29	\$\$\$	*****-*****	읍동 ***-*	2023-12-23	40,942,000	1,301,660
30	\$\$\$	*****-*****	읍면 읍리 ***-* 외 12	2024-01-09	164,067,400	5,219,650
31	\$\$\$	*****-*****	읍면 읍리 *** 외 1	2024-04-14	12,050,700	378,490
32	\$\$\$	*****-*****	읍면 읍리 ***-* 외 2	2024-04-13	30,836,200	930,740
33	\$\$\$	*****-*****	읍면 읍리 ***	2024-04-02	6,795,200	252,750
34	\$\$\$	*****-*****	읍면 읍리 *** 외 1	2024-05-01	3,809,400	114,740
35	\$\$\$	*****-*****	읍면 읍리 *** 외 1	2024-04-03	16,072,800	485,110
36	\$\$\$	*****-*****	읍면 읍리 ** 외 1	2024-05-25	3,593,550	116,740
37	\$\$\$	*****-*****	읍동 ***-*	2024-04-12	45,155,200	1,679,700
38	\$\$\$	*****-*****	읍면 읍리 ***-* 외 3	2024-04-27	52,947,620	1,598,160
39	\$\$\$	*****-*****	읍면 읍리 ***-*	2024-05-24	9,349,600	280,510
40	\$\$\$	*****-*****	읍면 성동리 *** 외 2	2024-04-11	38,518,370	1,378,560
41	\$\$\$	*****-*****	읍면 읍리 *** 외 2	2024-06-17	89,191,200	2,620,620
42	\$\$\$	*****-*****	읍동 ***-*	2024-06-04	49,000,800	1,774,550
43	\$\$\$	*****-*****	읍면 읍리 *** 외 7	2024-06-28	258,084,360	7,600,790
44	\$\$\$	*****-*****	읍면 읍리 ***-* 외 4	2024-06-20	91,652,300	2,871,720
45	\$\$\$	*****-*****	읍면 읍리 산 ** 외 2	2024-04-28	9,869,855	367,050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원상복구 미이행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상주시 ◇◇◇◇◇에서는 관내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신고·허가(협의) 및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 ☒☒☒☒☒)에서는 상주시 ☞☞면 ☞☞리 ***번지에 아래 [표 1]과 같이 ☞☞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사무소 설치 및 임시야적장 사용 후 농지로 원상복구 목적으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허가)를 하였다.

[표 1] ☞☞면 ☞☞리 ***번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허가) 내역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일시사용 면적(㎡)	목 적	일시사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면 ☞☞리 ***	***	답	1,359	1,359	공사 현장사무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따른 협의)	2021.1.12.~ 2024.6.30.	\$\$\$\$\$(주)

- ① 변경(협의) 기간연장 : 당초 2021.1.12.~2023.12.31. → 변경 2021.1.12.~2024.6.30.
- ② 목적 : ☞☞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사무소 및 임시야적장(폐기물포함) 부지사용후 우량농지 조성
- ③ 복구비용 : 11,308천 원
- ④ 수허가자 사업계획서(복구설계서) 복구계획
 - 반입한 토사는 사업완료후 반출하고 평탄작업(답변고르기), 우량토 순성토, 건축물(구조물철기)를 하여 농지로 복구 (자갈포설 271,8㎡ 제거, 사업구역에 발생하는 토사 우량토 순성토, 건축물-구조물 철기)
- ④ 협의(허가)조건 요약
 - 2024.7.20.까지 양질의 토양을 사용하여 농지로 원상복구(농지개량은 농작물의 경작에 적합한 흙사용)

* 상주시 확인 및 제출자료 재구성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따르면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主)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등 농지를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협의에 대하여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제1항에 따르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제42조(복구비용예치금의 등의 사용)에 따라 복구의무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 복구하지 아니하면 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의무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9조(벌칙)에 따르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제63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군수가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 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등을 해당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2조에 따르면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협의)신청서에 ①복구계획서(사용할 흙의 종류 및 매립·성토의 높이와 취토원의 소재지, 복구설계서 첨부) ②복구비용명세서(산정근거-사용할 흙의 수량, 단가, 운반비 및 거래실례가격)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복구비용이나 복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나 협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시사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복구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복구 비용예치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현지조사,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농지가 허가 (협의 포함)신청할 때 제출한 복구계획서(복구설계서)와 허가 시 부여한 조건에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당초 제출한 복구계획서와 허가 시 부여한 조건에 적합하게 복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구비를 반환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차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19-0363호]에 따르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취지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대해 일시 사용할 기간 및 연장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일정 기간 농지를 사용한 후 복구할 것을 전제로 허가 및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업생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농지로 즉시 복구하도록 함으로써, 농지를 원래 목적인 농업 생산에 이용하도록 하고 식량 생산의 기반인 농지를 보전하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한편, 수허가자인 \$\$\$\$\$\$(주)에서 2024. 6. 25일 토지소유자(\$\$\$)가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가설건축물을 버섯재배사¹⁾로 사용하겠다는 동의서를 근거로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복구비용반환청구서를 상주시에 제출하여, 2024. 8. 19일 ◇◇◇◇◇ ♠♠♠♠♠팀장 지방**주사 \$\$\$가 현장 출장하여 농지 이용행위에 해당하는 버섯재배사로 농지가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고 출장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지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서 복구한다는 전제하에 허가를 검토하여야 하고, 복구비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당초 제출된 복구계획 및 복구설계서대로 복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이 버섯재배사에 적합²⁾한지, 이를 악용하여 농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농지를 복구계획 및 복구설계서와 다르게 전용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한 복구비가 복구계획 및 복구설계서에 따라 농지로서 복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복구 예치 비용을 반환하지 말아야 하며, 복구계획 및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하지 않을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미복구할 경우 미리 예치 받은 복구비를 복구대행비로 사용하여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024. 6. 24일 수허가자인 \$\$\$\$\$\$(주)에서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복구비용반환청구서가 제출되었으면, ①당초 복구계획 및 복구설계서에 버섯재배사가 포함되어 있는지와 버섯재배사로 활용 가능한지

1)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제3항제2호 가항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2) 산림청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에 따르면 조립식 판넬형의 경우 지붕구조는 권취개폐 형태, 습도 조절을 위한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

등을 검토하고, ②당초 제출한 복구계획서와 복구설계서 및 허가한 허가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청구서를 반려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며, ③복구 계획 및 복구설계서에 따라 우량토 순성토, 건축물(구조물) 헐기 등 농지로 원상 복구를 하였는지 확인하여 복구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④현장확인 후 복구계획서 및 복구설계서대로 농지로 원상복구 되지 않았다면 원상회복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25. 3. 25일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한바, 아래 [표 2], [표 3]과 같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받은 사항 건축물, 야적장(자갈포설) 등이 그대로 있고, 우량토 순성토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기존 건축물에는 토목 자재 등이 있는 등 버섯재배 흔적조차 찾을 수 없어 복구계획 및 복구설계서대로 복구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섯재배사 명목으로 농지로 원상복구 되었다고 허위로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결재를 득하여, 농지 원상 복구 승인 및 복구비를 반환해주었다.

그 결과 농지 원상복구 의무자인 \$\$\$\$\$\$(주)에게는 농지원상복구를 하지 않게 되어 농지 원상복구비 11,308천 원³⁾의 복구비용에 대한 이익을 주게 되었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가설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어 농지전용 미이행 및 금액불상 가설건축물 축조 비용의 특혜를 주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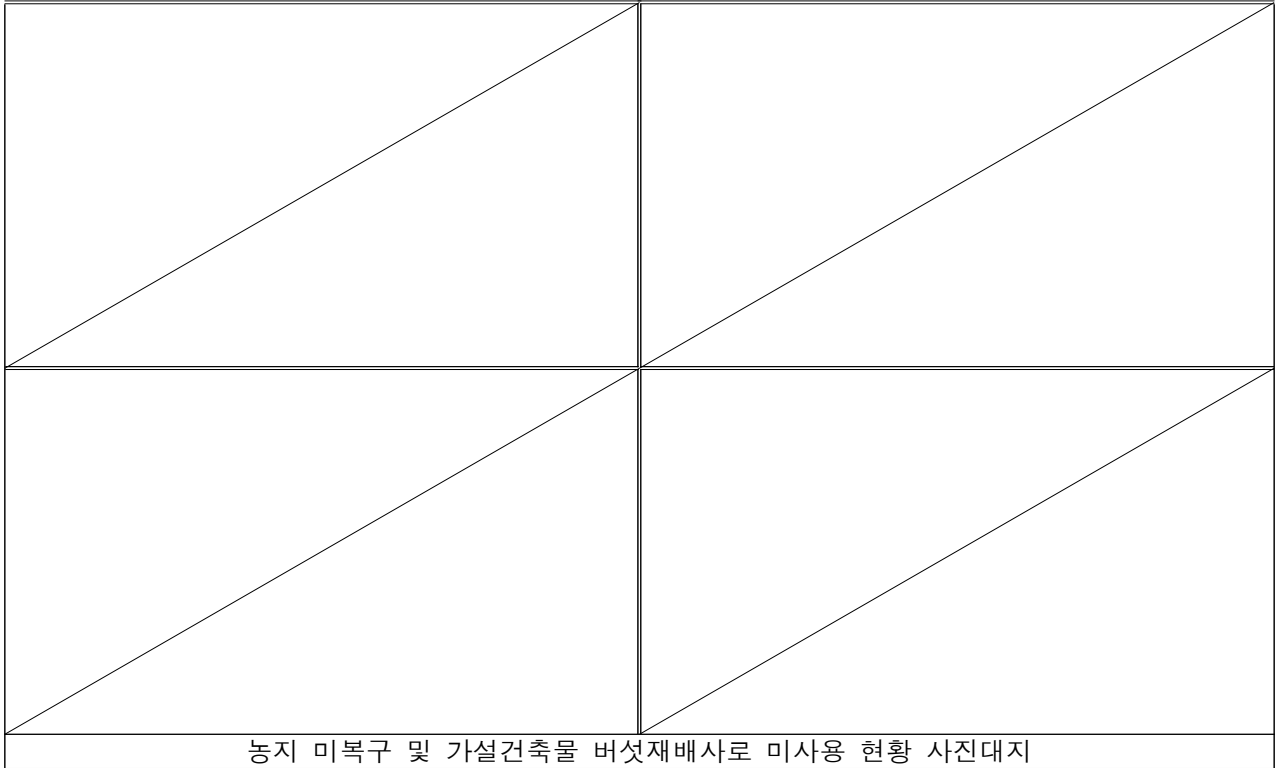
[표 2] 읍읍면 읍읍리 *번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 미복구 현황**

일시사용면적 (A=B+C)	가설건축물 (B)	야적장(자갈포설) 등 (C)	복구계획 복구설계서 이행여부	비고
1,359㎡	345.6㎡, (2동)	1,013.4㎡	우량토 순성토, 건축물 헐기 미이행	

3)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시 제출한 복구계획 및 설계서 상 복구비

[표 3] 읍읍면 읍읍리 ***번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 미복구 현장 사진

<p>읍읍면 읍읍리 ***번지 카카오맵 항공 사진대지</p>	<p>당초 농지 사용 사진(2020년 6월 포털 거리뷰)</p>
<p>현장 전경 및 야적장, 가설건축물 농지로 미복구 전경 (2025.3.25.)</p>	



* 2025.3.25.일 도 감사관실, 상주시 공보감사실, ◇◇◇◇◇ 현장 확인 재구성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택시 외부 광고 검사 부적정 등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읍읍읍읍읍
 내 용

상주시 읍읍읍읍읍에서는 상주의 농특산물과 관광지 등을 대도시 도심지역을 운행하는 택시 차량의 옆면 랩핑 광고문구와 미디어바로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표 1], [표 2]와 같이 홍보매체사(광고사)와 선정(계약)을 하고 외부광고 업무를 추진하였다.

[표 1] 2022년~2025년 택시 외부 랩핑광고 광고비 집행 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광고비 (계약금액)	홍보매체사 (광고기획사)	광고차량 계약대수	비고
합계	1,003,008			
2022년	153,600		200	- 서울 : 1월~12월 - 광고료 : 64,000원(월/대) - 제작 부착비 : 11,200천 원 (별도)
2022년	230,400		300 (대구200,부산50,울산50)	- 대구, 부산, 울산 : 1월~12월 - 광고료 : 64,000원(월/대) - 제작 부착비 : 16,800천 원 (별도)
2023년	72,000		100	- 서울 : 3월~8월 - 광고료 : 120,000원(월/대) - 부착비 5,500천 원 (별도)
2023년	254,388		300 (대구200,부산50,울산50)	- 대구, 부산, 울산 : 1월~12월 - 광고료 : 64,000원(월/대) - 제작 부착비 : 16,800천 원 (별도)
2024년	233,220		300 (대구200,부산50,울산50)	- 대구, 부산, 울산 : 1월~12월 - 광고료 : 64,000원(월/대) - 제작 부착비 : 16,800천 원 (별도)
2025년	59,400		300 (대구200,부산50,울산50)	- 대구, 부산, 울산 : 1월~3월 - 광고료 : 66,000원(월/대) - 제작 부착비 : 14,220천 원 (별도)

* 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2022년~2025년 택시 비디어바 광고비 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광고비 (계약금액)	홍보매체사 (광고기획사)	광고차량 계약대수	비고
합계	329,104			
2023년	78,064		1,300 (서울400,대구30, 대전200,부산300, 인천100)	- 광고기간 : 2023.11.19.~12.31 - 광고료 : 서울 49,400(월/대) 그 외 40,000(월/대)
2024년	207,480		350~400 (서울)	- 광고기간 : 1월~2월, 4월~12월 - 광고료 : 49,400원(월/대)
2025년	43,560		300	- 광고기간 : 1월 ~ 3월 - 광고료 : 48,400(월/대)

* 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1. 택시 외부 광고사업 과업지시서 미작성 부적정

「정부광고법」 제5조에 따르면 정부기관 등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제1항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홍보매체 선정)에 따르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정부광고 요청서에 정부 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용역의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하며, 계약문서의 종류에 따르면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필요시), 과업지시서,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택시 외부광고 등을 발주할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와 계약상대자의 법적 책임, 광고 검수

방법, 광고 수행 방법, 차량 변경 시 보고, 검수 사진 제출 방법, 광고비 지급 사항, 차량 운행불가 시 광고비 지급 방법 등 광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022년~2025년 대도시 택시 외부광고 시(랩핑광고, 미디어바) 언론진흥재단에 정부 광고 요청 시 첨부서류에 과업지시서 작성하여 계약 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3]과 같이 별도 과업지시서 없이 택시 광고 발주하여 택시 기사 동의 사항, 택시 광고 검수 방법, 차량 대폐차 시 광고비 지출, 택시에 대한 광고비 지출사항, 광고 보고서 제출 사항,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승인사항 등 홍보매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과업지시 없이 발주하게 되었다.

그 결과 광고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사업을 계약 및 시행하여, 상주시, 홍보매체사, 택시 사업자 간 법적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여부 등을 알 수 없게 되었다.

[표 3] 2022년~2025년 택시 외부 광고 과업지시서 발주 여부 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연도	광고비 (계약금액)	홍보매체사 (광고기획사)	정부광고요청 과업지시서 발주여부	비고
합계		1,332,112			
랩핑 광고	2022년	153,600		부	
	2022년	230,400		부	
	2023년	72,000		부	
	2023년	254,388		부	
	2024년	233,220		부	
	2025년	59,400		부	1월~3월
미디어바 광고	2023년	78,064		부	
	2024년	207,480		부	
	2025년	43,560		부	1월~3월

* 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2. 택시 외부 랩핑 광고사업 검사 소홀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르면 기성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다만, 3회마다 1회는 정식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상주시에서는 대도시 택시 옆면 랩핑광고를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의뢰하여 상기 [표 1]과 같이 홍보매체사를 선정하였으며, 홍보매체사에서는 상주시 사업계획에 따라 택시에 서울, 대구, 부산, 울산 택시 등 연간 300대~500대에 랩핑방식의 광고 대행 계약⁴⁾ 등을 하였고, 매월 상주시에서 광고비를 지급받아 랩핑 광고에 참여한 택시에게 광고료를 지급하였다.

이에 상주시에서는 홍보매체사(광고사)에 대하여 매월 광고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상주시는 매월 랩핑 광고지를 부착한 택시 차량의 전수 검수가 힘든 점을

4) (대구택시) \$\$\$와 계약, (서울,부산,울산 택시)매체사에서 각 택시기사 및 운수업체와 개별 계약

고려하여 홍보매체사와 구두로 협의하여 차량 광고 검수 사진에 사진촬영 일자 등을 표시하여 사업량의 일부를 검수 사진으로 제출하고 매월 기성대가 방식으로 광고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연간 및 일정 기간 계약을 통해 광고 차량에 대하여 사진으로 증빙하여 기성대가 청구가 있을 때에는 매월 감독 조서를 작성하고, 3개월마다 1회는 정식 검사를 하여야 하고, 홍보매체사와 계약한 택시 간의 동의서 및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상호 계약한 택시가 광고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검수 요청 사진이 홍보매체사에서 당해 월에 찍은 사진인지 확인 등을 하여야 하며, 조작이 의심되거나 중복사진, 차량 확인 불가 등으로 청구의 부당함이 있을 때에는 반송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022년도부터~2025년 2월까지 광고 기성대가를 지급 하면서 매월 감독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회마다 전체 사업량에 대한 정식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22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출 증빙자료를 확인해본바, 아래 [표 4], [표 5]와 같이 서울 택시는 운수업체나 택시 기사와 계약(동의)한 사항이 없고, 대구 택시의 경우 계약사항에 개별택시 내역이 없거나, 울산, 부산의 경우 광고 동의⁵⁾한 택시 내역과 다르게 광고 보고서 및 지출 증빙이 되어 있는 등 홍보 매체사(광고사)에서 제출한 검수조서와 차량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광고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검사하여 광고료를 지출하였다.

5) 매년, 매월 차량이 대폐차 등으로 광고 차량이 바뀐 경우 차량 광고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2019년도 광고 동의서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전체 광고 차량 대수 알수 없음

[표 4] 2022년~2024년 택시 외부 랩핑 광고 택시 동의와 지출증빙 차량내역 일치 여부

구분	연도	홍보매체사와 택시간 계약(동의) 여부	광고 계약(동의)와 보고서 일치 여부 (매년1월 기준)	비고
서울	2022년	별도 계약 및 동의사항 없음	별도 계약(동의)가 없어 확인불가	
대구	2022년~2024년	홍보매체사와 \$\$\$와 계약	광고 계약(동의)차량 내역이 없어확인 불가	
부산	2022년	홍보매체사와 택시 기사 광고 동의서 첨부	82%(50대중 41대 일치)	
	2023년	홍보매체사와 택시 기사 광고 동의서 첨부	66%(50대중 33대 일치)	
	2024년	홍보매체사와 택시 기사 광고 동의서 첨부	52%(50대중 26대 일치)	
울산	2022년	홍보매체사와 택시 기사 광고 동의서 첨부	56%(50대중 28대 일치)	
	2023년	홍보매체사와 택시 기사 광고 동의서 첨부	40%(50대중 20대 일치)	
	2024년	홍보매체사와 택시 기사 광고 동의서 첨부	38%(50대중 19대 일치)	

* 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표 5] 2022년~2024년 택시 외부 랩핑 광고 부적정 내역

지역	차량번호	지출증빙 검수 사진일자	부적정 내용	비고
서울		2022.12	검수사진 부적정	
서울		2022.12	검수사진 부적정	
서울		2022.12	검수사진 부적정	
서울		2022.12	검수사진 부적정	
서울		2022.12	검수사진 부적정	
서울		2022.12	검수사진 부적정	
서울		2022.11	검수사진 부적정	
서울		2022.11	검수사진 부적정	
서울		2022.11	검수사진 부적정	
서울		2022.11	검수사진 부적정	
서울		2022.11	검수사진 부적정	
서울		2022.11	검수사진 부적정	
부산		2022.12.15	검수사진 부적정	
부산		2024.11.15	검수사진 부적정	
부산		2024.10.15	검수사진 부적정	
부산		2024.10.15	검수사진 부적정	
부산		2024.10.15	검수사진 부적정	
울산		2022.11.18	검수사진 부적정	
울산		2022.12.15	검수사진 부적정	
울산		2022.12.15	검수사진 부적정	
울산		2023.11.20	검수사진 부적정	
울산		2024.11.13	검수사진 부적정	
울산		2024.11.13	검수사진 부적정	
울산		2024.11.13	검수사진 부적정	

울산		2024.11.13	검수사진 부적정	
울산		2024.11.13	검수사진 부적정	
울산		2024.11.13	검수사진 부적정	
울산		2024.11.13	검수사진 부적정	
울산		2024.11.13	검수사진 부적정	
울산		2024.10.15	검수사진 부적정	
울산		2024.10.15	검수사진 부적정	
울산		2024.10.15	검수사진 부적정	

3. 택시 미디어바 광고사업 부적정

「정부광고법」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에 따르면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홍보매체 선정)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홍보매체 선정)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 등의 장이 의견을 내기 위해 홍보매체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홍보매체의 구독률, 열독률, 시청률, 이용률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상주시 ㄱㄱㄱㄱㄱ에서는 상기 [표 2]과 같이 2023년 ~ 2025년 대도시 택시 미디어바 광고를 위해 대구 소재 주식회사 \$\$\$를 언론진흥재단에 홍보매체사(광고사)로 선정하도록 추천하여 미디어바 광고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상주시 ㄱㄱㄱㄱㄱ에서는 택시 미디어바 홍보매체사(광고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홍보매체의 운영 등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거나, 언론진흥재단 등에 해당 미디어바 홍보를 위한 자료 등을 요구하여 해당 업체가 택시 운수업체와 계약한 업체인지, 홍보매체사가 광고를 타 업체에 광고를 위탁(하도)을 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여 매체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광고를 직접 시행하지 않고 위탁(하도)할 경우 과업지시서에 위탁(하도)의 범위 등을 명시하거나, 계약체결 시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여 사전적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023년 ~ 2025년 서울 등 대도시 미디어바 광고를 주식회사 \$\$\$ 홍보매체사 선정 시 미디어바 광고를 직접 시행하여 운수업체와 계약한 사항인지 검토와 업무 범위에 대한 과업지시서도 없었으며⁶⁾, 아래 [표 6]과 같이 지출 증빙서류에 첨부된 택시운수업체와 계약서는 홍보매체사인 주식회사 \$\$\$가 아닌 \$\$\$와 택시운수사간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계약서 내용에 상주시 홍보 광고에 대한 내용과 광고 기간에 대한 내용도 없으며, 광고 차량에 대한 내역도 없고, 계약 일자 또한 2020 ~ 2022년⁷⁾으로 되어 있는 등 주식회사 \$\$\$와 운수업체 간 상주시 광고 계약 내용이 없어 \$\$\$가 광고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에게 미디어바 광고를 맡겨서 승인 없이 불법으로 위탁(하도)하여 시행 하였으며, 이에 정상적으로 광고를 하였는지, 운수업체에게 적정하게 광고비가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주식회사 \$\$\$를 홍보매체사로 선정 하여 미디어바를 광고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였다.

[표 6] \$\$\$ 운수업체 간 미디어바 광고 계약 내용 요약

구 분	내 용	비 고
홍보매체사(\$\$\$)와 운수업체 계약	계약사항 없음 (\$\$\$ ⇔ 운수업체 간 원청계약)	\$\$\$와 \$\$\$ 매체 판매대리점 서류 첨부

6) 1. 과업지시서 미작성 부적정 참조

7) 상주시 미디어바 광고계약기간은 2023년~2025년

<p>\$\$\$ 운수업체간 계약서 내용 요약</p>	<p>① 상주시 광고내용 및 광고 기간, 계약 기간 내용 없음, ② 차량 내역 없음 ③ 계약 일자 2020년~ 2022년 ④ 3개월간 살생비 명목 운수업체 광고비 없이 시범운영</p>	<p>\$\$\$에서 광고를 직접수행하지 않고 \$\$\$에 광고를 위탁 시행</p>
-------------------------------	---	---

* 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표 8] \$\$\$ 운수업체 간 계약서

	<p>\$\$\$ 운수업체 간 계약서</p>
	<p>\$\$\$ 운수업체 간 계약서</p>

* 상주시 지출증빙자료 일부 발췌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 BBB는 주의 처분하시고, CCC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상주시 ♣♣♣♣♣♣에서는 화물업계의 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주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관리하고 있다.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의심거래 상시점검 미이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제12호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 점검시스템(이하 “상시 점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화물차주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하여 제공하고 부정수급 조사 및 행정처리 절차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33조제3호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상시 점검시스템으로 통보되는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하여 1개월 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통보되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상시 점검시스템으로 통보되는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하여 1개월 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3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했으며,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고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데도, 아래 [표 1]과 같이 2022. 9. 29.부터 2025. 2. 18.까지 상시 점검시스템으로 통보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331건(2022년 22건, 2023년 58건, 2024년 210건, 2025년 41건)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도 조사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방치해 두고 있다.

[표 1]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미이행 현황

(단위 : 명, 건수, 원)

구 분	상시점검 미이행 현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원	건수	보조금액	인원	건수	보조금액	인원	건수	보조금액	인원	건수	보조금액	인원	건수	보조금액
계	54	331	5,212,220	6	22	354,064	13	58	607,471	29	210	3,419,449	6	41	831,236
주행거리 기반 주유량 의심주유	16	176	3,277,539	0	0	0	0	0	0	14	148	2,634,978	2	28	642,561
단시간 반복 주유	30	118	1,462,183	5	18	283,686	10	46	525,927	12	45	543,409	3	9	109,161
1일 4회 이상 주유	8	37	472,498	1	4	70,378	3	12	81,544	3	17	241,062	1	4	79,514

* 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 부적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행위금지 사항)제1항 및 같은 규정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환수를 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상 제재 조치는 위반 횟수별로 1차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2차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를 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행위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상시 점검시스템에서 의심되는 항목별 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 유무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으로 확인이 될 경우 지급 받은 유가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하고 위반 횟수별로 1차 위반 시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차 이상 위반 시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1개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 거래 횟수가 2차 이상으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의 행정제재인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만을 하였다.

[표 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행정제재 현황

구분	차량번호	위반사항	위반 거래 횟수	위반 행위기간	행정제재	비고
1		거리대비 주유시간 이상주유	2	2022.7.28.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차 이상 위반으로 1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 대상
2	2		2024.3.7.			
3	4		2024.6.17. ~2024.9.6.			
4		주행거리 기반 주유량 의심주유	5	2023.1.23. ~2023.2.10.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차 이상 위반으로 1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 대상
5	16		2023.2.2. ~2023.2.19.			
6	12		2023.1.26. ~2023.2.18.			
7	8		2023.04.11. ~2023.5.8.			
8	4		2023.5.24. ~2023.6.16.			
9	6		2024.1.8. ~2024.2.5.			
10	8		2024.2.15. ~2024.3.12.			
11	13		2024.2.2. ~2024.2.26.			

* 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주의)
- ②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③ 관련자 AAA, BBB, CCC, DDD는 주의 처분하시고, EEE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대형 건축물 등의 저수조 및 급수관 위생상의 조치 등 지도·감독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상주시 ▲▲▲▲▲▲▲(구 ◆◆◆◆◆◆◆◆)⁸⁾에서는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저수조 및 급수관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 또는 세척 등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대형 건축물 저수조 위생상의 조치 등 지도·감독 부적정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에 따르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따른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소독 등 위생조치 또는 세척 등 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수도법」 시행규칙 22조의4(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제1항에 따르면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8) 2025.1.1. 조직개편 : ◆◆◆◆◆◆◆◆ → ▲▲▲▲▲▲▲, ▼▼▼▼▼▼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의 기준⁹⁾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고,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하며 「수도법」 제36조(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에 따르면 저수조 관리대상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5년마다 8시간의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수도법」 제83조(벌칙)제6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33조제3항의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소독 등 위생조치 또는 세척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7조(과태료)제4항제7호에 따르면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해당 건축물의 저수조의 반기별 청소 이행 여부, 청소 후 수질검사 여부, 수도시설 관리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규정 위반 시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는 등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9)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감사일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위생조치를 해야 되는 대형 건축물이 최대 164개 시설로 파악하였으나 실제 현황 관리는 52개 시설만 하고 있었으며,

저수조에 대한 위생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미이행 건축물은 최대 80개소, 청소 후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이 148개소, 5년마다 8시간 교육을 받지 않은 시설 116개소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다.

[표 1] 관리대상 대형 건축물 위생상의 조치 등 현황

(단위:개소)

대상 시설	청소미이행						교육 미이행	청소 후 수질검사 미이행	관리대상 누락
	'22년 상반기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	'24년 하반기			
164	80	78	78	76	75	76	116	148	112

* 상주시 ▲▲▲▲▲▲▲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관리대상 대형 건축물이 매년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검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나 아래 [표 2]와 같이 정기 수질검사 누락한 것을 방치하여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정기 수질검사 미이행 현황

(단위:개소)

대상시설	정기 수질검사 미이행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164	81	84	77	

* 상주시 ▲▲▲▲▲▲▲ 제출자료 재구성

2. 대형 건축물 급수관 일반검사 등 지도·감독 부적정

「수도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¹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¹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 등 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일반검사¹²⁾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 하여야 하고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거나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검사¹³⁾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수도법」 제83조(벌칙)제6호에 따르면 급수관에 대한 세척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수도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대형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건축물의 급수관에 대하여 일반검사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지,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적절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10) 연면적 6만㎡ 이상 대규모점포, 공동주택, 운수시설 및 연면적 5천㎡ 이상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 시설, 운동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등

11) 최초 일반검사 :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회 이후의 일반검사 :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12) 기초조사(배관도면, 관 종류, 배관길이 등 도면·서류·현지조사 및 출수불량, 녹물, 누수 등 문제점 조사)와 급수관 수질 검사(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실시

13) 수압, 내시경관찰, 초음파 두께 측정, 유속, 유량, 외부 부식 관찰 등 현장 조사를 실시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 3]과 같이 지도·감독해야 되는 급수관 대상 시설을 최대 205개소 중 176개소가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급수관 일반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대형 건축물 급수관 세척 등 조치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3] 급수관 관리대상 대형 건축물 조치 현황

(단위:개소)

관리대상	관리대상 누락	급수관 일반검사 이행	급수관 일반검사 미이행	비고
205	176	29	176	

* 상주시 ▲▲▲▲▲▲ 제출자료 재구성

3. 저수조청소업 지도·감독 부적정

「수도법」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저수조청소업의 신고)에 따르면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아래 [표 4]와 같이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 4]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구 분	기 준
인 력	<p>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각각 갖추 것</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p> <p>가. 환경(수질부문)·토목·위생·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p> <p>다.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p> <p>2. 청소종사자 3명 이상</p>
시 설	-참고

장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운반차량: 1대 이상 -고압세정기(18ℓ/min, 150kg/cm² 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환기기구(200m²/hr): 1대 이상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고무재질의 옷·안전모·안전벨트·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색도계·탁도계): 각 1대 이상(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누전차단기: 1대 이상
-----	--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발췌

그리고 「수도법」 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7(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5]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사업장 폐쇄명령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4 발췌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감사일 현재 아래 [표 6]과 같이 저수조청소업자의 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저수조청소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6] 저수조청소업 관리 현황

연번	사업장명	대표자	신고일	감독원 현황(명)	종업원 현황(명)	인력 기준	비고
1			2009.10.27	1	3		
2			2007.12.27	1	1	미준수	감사기간에 종업원 1명 채용, 1명 채용 중
3			2007.12.26	1	0	미준수	
4			2013.07.30	1	0	미준수	
5			2013.07.30	1	3		
6			2020.01.29	1	3		
7			2020.07.24	1	0	미준수	감사기간에 종업원 3명 채용

* 상주시 ▲▲▲▲▲▲▲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상주시는 대형 건축물의 저수조 및 급수관의 위생상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을 부적정하게 수행하였으며, 저수조 청소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도 소홀히 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주민의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수도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 BBB는 주의 처분하시고, CCC(10 병합), DDD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상주시 ㉸㉸㉸에서는 각종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건설폐기물법」 제15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르면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구분하고 있고,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이며,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9-179호, 2019. 10. 24.) 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의 신인도 규정¹⁴⁾에 따르면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¹⁵⁾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¹⁶⁾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가점(0.09)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려는 경우 위 신인도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써 법령상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자체 원료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가점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평가기준 중 신인도에 따른 가점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 또는 콘크리트 제품(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 50퍼센트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인증이 아닌 순환골재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서(골재 및 미분말)를 받은 경우에도 부당한 가점을 0.09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에

14)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III. 신인도, 3. 기타, 사.

15)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이상 사용한 제품),

2. 콘크리트 제품(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등의 제품 또는 50% 미만 사용한 제품 중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제품)

16)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4.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

대한 신인도 가점 0.09점은 부여할 수 없어 최대 신인도 가점(여성기업 0.09점, 소상공인 0.09점)은 총 0.18점이 되므로 종합평점은 당초 95.08점이 아닌 94.98점이 된다.

[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결과

(단위 : 천 원)

계약체결현황				심사분야·항목	배점	심사평점	정당평점	비고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체결일	합계		95.08	94.98	적격 통과 점수 (95점)	
		422,348	2024.7.19.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능력	30	29.9		29.9
					경영상태	10	9.82		9.82
				입찰가격		60	55.08		55.08
				신인도		-3~ +0.72	0.27		0.18 ¹⁷⁾

※ 입찰 참여 : 65개 업체

그 결과 적격통과점수(95점)에 미달하는 부적격 업체 \$\$\$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차순위 심사대상 업체는 위 용역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는 훈계 처분하시고,
- ③ 관련자 BBB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17) 소상공인 0.09점, 여성기업 0.09점
신인도는 당해용역수행능력 점수가 40점 미달 시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상주시 ▲▲▲▲▲▲▲(구 ◆◆◆◆◆◆◆◆)18)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사명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사 (대표자)	건설사업 관리자(감독)	비고 (공정률)
	계	도급	관급				
	16,571	9,218	7,354	2023. 06. 20. ~ 2027. 07. 23.		\$\$\$ (**7)	25%
	12,591	7,293	5,298	2021. 01. 10. ~ 2026. 01. 07.		\$\$\$ (**7)	50%
	7,965	6,057	1,908	2022. 12. 27. ~ 2025. 12. 25.		\$\$\$ (**7)	75%
	6,645	4,170	2,475	2023. 09. 04. ~ 2025. 10. 01.		\$\$\$ (**7)	54%

1. 수도사업 인가 전 공사착공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 미흡

「수도법」 제3조 6호, 8호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하며,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광역상수도) 또는 시·도지사(지방상수도), 또는 시장·군수(마을상수도)에게 각각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1일 공급량 500세제곱미터 이상의 지방

18) 2025.1.1. 조직개편 : ◆◆◆◆◆◆◆◆ → ▲▲▲▲▲▲▲, ▼▼▼▼▼▼

상수도인 “☞☞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추진을 위해서는 관할 시·도시자의 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인가권자의 고시일인 2022년 7월 20일 이전인 2021. 12. 28.일에 공사를 계약하고 2022. 1. 10.일 공사를 착공하여 착공일 기준 6개월여 동안 무인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등 수도사업 추진 관련 행정절차를 미흡하게 이행하였다.

그 결과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해당 법령의 취지를 위반하게 되었다.

2. 가설사무소 과다계상 및 정산 미실시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 목적물을 제조·조립·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 공사와 영구 시설물 공사의 작업 단계별 시공 상태,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표고·치수의 정확도 확인,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직접 검측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통합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와 “♣♣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중복 적용되어 있는 감독·감리자용 가설사무소에 대하여 삭제하거나 면적 조정 등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는 통합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2건의 사업(♣♣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중 감리자 비상주 사업공사에 대하여 감독·감리자용 가설사무실을 삭제하거나 면적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실정보고나 감액 등의 조치 없이 공사비 3,907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다.

3. 순환골재 적용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 계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폭이 2.75m 이상이고 길이가 1km 이상인 공사, 포장면적이 9천㎡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4건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이 순환골재 의무대상인지를 검토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3개 사업이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 대상임에도 설계도서 검토를 미흡하게 하여 의무사용 자재를 반영하지 않아 사업비 97,751천 원¹⁹⁾을 과다 계상하여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 법령의 취지를 위반하게 되었다.

4. 교통신호수 노임 중복 지급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제9절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직접노무비²⁰⁾의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 지급 내역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 지급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을 시행할 때에 교통신호수의 노임을 안전관리비 또는 직접노무비 중 어디에 포함할지 명확히 설정해야 하고 실제 지급 시 이중 정산되지 않도록 노무비와 안전관리비 정산서 상호 대조 등을 통하여 중복 또는 전용되어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했다.

19) ♣♣지구 사급-일반골재를 관급-순환골재 적용 절감 65,800천 원, ♣♣면 재생골재 반영 절감 9,551천 원, ♣♣면 재생아스콘을 반영 22,400천 원

20) 건설공사, 용역 등의 계약이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직접 고용하여 계약이행 현장에 실제 투입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의 안전관리비에 계상된 교통신호수의 노임이 직접노무비 직불금 내역과 안전관리비 정산금액에 각각 은척면 71,810천 원, 이안면 23,700천 원이 중복으로 적용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 결과 법령상 절차로 인한 수도사업의 정당성 훼손, 행정통제 및 재정집행 투명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사업 추진 시 검토 부족 및 정산절차의 미흡으로 발생한 사업비 197,168천 원(제경비 포함)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197,168,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 CCC, DDD(☞ 병합), EEE(☞ 병합)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및 제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 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감독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 ☞☞☞☞☞☞☞ 설치공사’의 설계 내역서를 검토 한 결과 차선도색 5,550㎡에 사용되는 노면 표지용 페인트 1,295포를 관급자재가 아닌 사급자재로 반영하여 사업비 28,687천 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였고, 흙막이 가시설의 향타 작업 말뚝박기 천공에서 T₃(말뚝근입시간)의 단가를 산정 시 케이싱의 사용 여부에 따라 케이싱 사용시 8분을 적용하고 미사용할 경우 5분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일괄 8분으로 적용하여 공종 단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사업비 132,990천 원이 과다 계상되는 등 설계도서 검토를 미흡하게 하여 총 161,677천 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을 절감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3. 공사비 과다 계상 및 공사감독 업무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2020. 12. 16.)」 제4조, 제138조제1항, 제14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설계도면·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 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된 공정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설치공사”의 관로 상부 되메우기를 시행하면서 잡석을 부설하고 램머로 다지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램머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 단가가 저렴한 콤팩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시행하였음에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시정하지 않았고, 사업비 3,410천 원(제경비 포함)을 설계변경으로 감액하지 않았다.

4. 안전관리비 부적정 계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제12절제6항에 따르면 설계에서 별도 계상한 정액비용 항목(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은 예정가격에서 정액으로 반영된 항목이므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실비정산 또는 정액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절 제7항에 따르면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정해진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계약 후 조정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에 따라 직접공사비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해당 예비율 항목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51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및 통행안전 관리대책 비용 등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계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함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 ☞☞☞☞☞☞☞☞ 설치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안전관리비의 적용절차를 준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제4호의

안전관리비용(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의 배치비용)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순공사원가에 계상하였고 그 결과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목적성 비용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계약 후 임의 조정이 금지된 항목에 대하여 부당하게 낙찰률이 적용되어 사업비 16,610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소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172,915,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16 병합), BBB(16 병합)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 ○○○○

내 용

상주시 ○○○에서는 ☞☞면 ☞☞리 일원 ☞☞ ☞☞소하천 정비공사를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 업 량	공사금액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 ☞☞ 소하천 정비공사	상주시 ☞☞면 ☞☞리	교량B5.0m, L20.0m 스톤네투 L=995.0m	1,911	1,298	613	2024.02.02. ~ 2025.04.29.		80%

1. 잔여지 매수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2019.12.5.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제7조에 따르면 잔여지가 농지에 해당할 경우 [표 2]와 같이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2] 잔여지 매수 기준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잔여지가 일정한 수준의 면적에 미달²⁴⁾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잔여지에 접한 도로 또는 수로가 없어져 농지로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하거나 잔여지의 형상이 부정형²⁵⁾으로 바뀌어 농지로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측사 부지인 잔여지의 접면 도로상태가 바뀌어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지에 대한 잔여지 매수 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잔여지 면적이 330㎡이하인지 여부, 잔여지에 접한 도로가 없어지거나 형상이 부정형으로 바뀌어 농지로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2023. 2. 6. 민원인이 잔여지 매수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잔여지 면적이 1,183㎡로 매입 기준 면적보다 3.5배 이상이고 농지의 진출입로가 차단되지 않으며 최소폭이 5m이상으로 농기구의 회전에도 어려움이 없는 등 영농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에도 종합적인 검토 없이 2023. 3. 29. 잔여지를 매수하였다.

24) 일단의 토지가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330㎡이하로 축소된 경우를 말함. 다만, 일단의 토지 중 잔여지의 비율이 25%이하인 경우에는 49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25) 잔여지의 형상이 사각형으로서 폭 5미터 이하인 경우 또는 삼각형으로서 한 변의 길이가 11미터 이하인 경우 등은 부정형으로 보며, 그 이외의 형상은 잔여지에 내접하는 사각형 또는 삼각형을 도출하여 판단함.

[표 3] 잔여지 매수청구 현황

신청자	위 치			지 목		면적(㎡)			비고
	소재	당초	편입	공부	현황	당초	편입	잔여지	
\$\$\$	상주시 읍면리	***	*****	답	답	2,458	1,275	1,183	

※ 상주시 제출자료 참고 작성

그 결과 잔여지 매수 보상비(토지, 영농보상비) 45,338,470원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안요청 부적정

상주시 ○○○에서는 2023. 11. 29. “○○○ 소하천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아래 [표 4]와 같이 상주시 ○○○에 구매 요청하였다.

[표 4] 자재 구매요청 현황

(단위 : 원)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스톤네트	1000×1000×400	6,270	㎡	66,500	416,955,00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²⁶⁾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2108호)」 제49조 및 제52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수요기관의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2단계 경쟁에 참여하도록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고 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26)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말함.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3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 5]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²⁷⁾ 또는 표준평가방식²⁸⁾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할 경우 수요기관의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2단계 경쟁에 참여하도록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제안 요청하여야 하며, 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 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 적정한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로부터 구매요청 받은 자재(스톤네트)에 대해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구매 절차를 추진하면서 아래 [표 5]와 같이 2023. 11. 30. ○○○에 부서의견 조회 공문발송 이후 ○○○로부터 3차례의 수정의견을 접수받아 처리하였는데 ○○○에서 제안한 5개 구성업체 중 1개 업체²⁹⁾가 높은 단가로 인한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배제대상이 되는데도 그대로 접수받아 처리하였고 당시 관내 자재를 생산하는 타업체³⁰⁾가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채 4개소만 제안 요청하였다.

27) 평가항목·지표당 배점한도가 있고 기술 평가(기술력, 품질, 성능 등)와 가격 평가를 모두 고려하되, 기술평가 비중이 높으며 종합적으로 우수한 공급업체 평가 시 사용

28) 평가항목·지표당 배점이 정해져 있고 가격 평가와 일부 품질 요소(납품실적, A/S 능력 등)를 고려하되, 기술 차이가 크지 않은 동일·유사 제품 간 경쟁을 유도 시 사용

29) \$\$\$\$\$

30) \$\$\$\$/\$김천시 소재

[표 5] 스톤네트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구매 추진현황

일 자	(공문)시행	내 용	비 고
'23.11.29.	●●● → ㉠㉠	· 관급자재(스톤네트) 구매요청	
'23.11.30.	●●● → ㉠㉠	· 2단계 경쟁구매 관련 평가방법에 대해 부서의견 조회 ※ “5개 이상 업체로 구성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5인으로 구성 가능”명시	
'23.12.01.	●●● → ㉠㉠	· 2단계 경쟁구매 관련 평가방법 및 구성업체 ³¹⁾ 에 대해 부서의견 제출 ※ 평가방법을 “표준평가방식 II 가격 A형”으로 제출	
'23.12.08.	●●● → ㉠㉠	· 부서의견 1차 수정제출 ※ 평가방법 및 구성업체는 상동(배점 오기로 인한 수정)	
'23.12.11.	●●● → ㉠㉠	· 부서의견 2차 수정제출 ※ 평가방법을 “종합평가방식 가격 A형”으로 제출하였으며 구성업체와 배점은 1차 수정제출 건과 동일	
'23.12.14.	●●● → ㉠㉠	· 부서의견 3차 수정제출 ※ 평가방법 및 구성업체는 2차 수정제출 건과 동일, 배점은 수정함	
'23.12.19.	㉠㉠ → 조달청 종합쇼핑몰	· 구성업체 5개업체중 “\$\$\$\$”을 제외한 4개업체 2단계 경쟁 제안요청 ※ 5개업체 미만사유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2조제2항에 따라 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 범위(416,955,000원) 이내인 업체 4개소만 선정”으로 기재하여 처리	
'23.12.28.		· 제안마감	

※ 상주시 제출자료 참고 작성

그 결과 제안에 참여하지 못한 해당 중소기업의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제안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제안 참여 기업 수가 적음에 따른 일부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경쟁의 공정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를 훼손하였다.

3. 공사감독 소홀 및 공사비 과다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되어 있다.

31) 구성업체 현황 : (주)\$\$\$, \$\$\$, \$\$\$\$, \$\$,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및 제138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로부터 위임받은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 목적물이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된 공정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상주시 ○○○에서는 교량(☞☞1교) 철거에 따른 가도 개설 시 PP 마대를 설치토록 변경하였으나 실제로 톤마대로 설치한 건(감액 3,090천 원), 불필요하게 내역에 계상된 교명주 미삭제 건(감액 2,420천 원) 등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설계변경 미이행 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5,510,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는 주의 처분하시고, CCC, DDD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상주 〇〇〇〇〇〇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〇〇〇〇〇
내 용

상주시 〇〇〇〇〇에서는 상주시 〇〇면 〇〇리 일원 상주 〇〇〇〇〇 조성 사업을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 업 량	공사금액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상주 〇〇〇〇〇 조성사업	상주시 〇〇면 〇〇리 산** 일원	〇〇〇〇 조성 10.7ha	5,444	3,605	1,839	2023.01.26. ~ 2025.10.26.	\$\$\$\$	70%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46조 및 제49조에 따르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〇〇〇〇〇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자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승인·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업을 착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과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상주 ❀❀❀❀❀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승인기관의 장 등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였으나, 아래 [표 3]과 같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표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일자

일 자	협의기관	협 의 내 용	비 고
2023.09.14.	경상북도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 상주시 ㄷㄷㄷㄷㄷ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회신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에 따라 사업계획 반영하고 그 결과를 대구지방환경청으로 통보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 내지 제49조에 따라 사업 착공 등의 통보, 협의내용 이행 관리·감독 등 철저히 이행 	
2024.05.29.	경상북도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 상주시 ㄷㄷㄷㄷㄷ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주시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 승인조건 및 관계부서 협의의견 등을 준수 추진 	사업 승인
2024.11.05.	상주시 ㄷㄷㄷㄷㄷㄷ → 경상북도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대구지방환경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 반영 결과 제출 협의내용 반영결과 및 사업착공 통보서 제출 	

※ 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세부)내용 관련 지적사항

구분	협의(세부)내용	지 적 사 항	비고
1	I.총괄 ◦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협의내용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않음	
2	II.세부 협의내용 ◦ 발파공사전 사전예고 및 시험발파를 통하여 인근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진동 영향이 규제기준 이내 혹은 최소화되도록 장약량 등을 조절 후 발파 시행	◦ 시험발파 미시행	
3	III.기타사항 ◦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확정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 반영여부 및 그 반영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인가,허가,결정 등)을 하거나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통보 [별첨1]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과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별첨3]하여야 함	◦ 사업승인 후 협의내용 반영결과 및 사업착공통보를 160일 지연함	

그 결과 환경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이루고 환경영향을 사전에 저감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 취지가 훼손되었고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주민피해가 우려된다.

2.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이하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장비를 구비하고, 20㎡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수립한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고(변경계획포함)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초급 품질 관리 대상공사인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설사업자가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였는데도 승인하지 않았고 공사 총괄1~2회 변경 후 건설사업자가 변경시험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제출토록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품질시험기준 대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않는 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자재나 시공이 설계기준이나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인한 구조물의 내구성, 안전성 및 기능성 저하가 우려된다.

3.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이행 부적정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조의4, 제1조의5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 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한 사항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결과에 대한 해당 개발계획 등에 반영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해 공사 착공 후 20일 이내 관리책임자 지정 및 착공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 현장에 협의 내용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인 상주시 ▴▴▴▴▴에서는 2022. 12. 8. 상주시 ▲▲▲▲▲로부터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으나 공사 착공 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거나 착공 사항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협의 내용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지 않는 등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재해 저감시설이나 예방조치가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주체 및 관리대장이 부재인 상태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정산항목에 대한 물가변동액 반영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3항의 약정에 따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정산항목은 [표 4]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표 4] 계약금액의 정산항목 및 규정

정산항목	관 련 법 령
국민건강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국민연금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퇴직공제부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환경보전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7개 정산항목은 정산 시 이미 물가상승분이 반영되므로 확인된 실적 정산 금액에 물가상승분을 추가로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회의 물가변동액을 반영하면서 [표 5]와 같이 국민 건강보험료 등 7개 정산항목에 대한 물가상승분 11,751천 원을 정산하지 않음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표 5] 정산항목 물가상승분 반영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물가상승분 반 영 액	정산항목 제외 물가상승분 반 영 액	정 산 항 목 물가상승분 반 영 액	비 고
계	166,136	154,385	11,751	
1 회	80,645	75,080	5,565	
2 회	85,491	79,305	6,186	

※ 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5. 공사감독 소홀 및 공사비 과다 계상

가. 토목분야

「도로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암굴착을 위하여 수행되는 발파 작업은 진동, 폭음, 비산 등의 피해발생으로 환경분쟁 및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피해를 저감시키면서 경제성과 시공성을 고려한 적정 발파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 지침(건설교통부, 2006. 12.)」을 참조하여 설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 지침(건설교통부, 2006. 12.)」에 따르면 암발파 공법을 지발당 장약량을 기준으로 6가지 타입으로 표준화하고, 보안물건의 허용진동기준과 이격거리에 따라 ‘거리~지발당장약량조건표’에 의거 설계자가 적정 발파공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발파공사 시행 전에는 반드시 시험발파를 통하여 발파진동 추정식을 구하고, 시공성과 경제성 및 인근 보안물건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발파공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에 따르면 시험발파 및 시공단계에서 시공회사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발파 착수 전 발파영향권 내 보안물건에 대해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여 시험발파, 본 발파, 계측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6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관계규정 저촉여부, 안전성 확보여부, 계측계획 적정성 여부 및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공사감독자로서 시공자로부터 발파작업 전 발파영향권 내 보안물건에 대해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시험발파계획서를 제출받아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험발파를 통해 적정 발파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상주 ㉸㉸㉸㉸㉸ 조성공사”를 감독하면서 2024. 3. 5. ~ 2024. 4. 20. 암발파 계획된 당시 시공자로부터 발파작업 전 발파영향권 내 보안물건에 대해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시험발파계획서를 제출토록 지시하거나 접수하지 않았으며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확인하지 않았고 시험발파를 하지 않아 적정발파공법이 도출되지 않았는데도 시험발파비용을 1차분 내역에 그대로 계상한 채 2024. 10. 22. 준공하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정산하여 감액(23,107천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 주차장 사면을 조경석 쌓기(H1.5m~2.5m, L=30m)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전석쌓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사업비를 감액(6,22천 원) 조치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본 발파 전 주변 구조물·지반에 대한 영향 예측과 위험도 분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본 발파의 장약량, 천공패턴, 지연시간, 발파 순서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설계변경 미이행 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나. 건축분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 지침 제116조 및 제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서류인 품질시험·검사대장,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구조물별 콘크리트타설현황,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현황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 목적물이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각종 서류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사감독자는 “상주  조성공사”  신축공사를 감독하면서 아래 [사진]과 같이 건축물 바닥 몰탈 시공한 결과 바닥전체 균열(1~6mm)이 진행되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구조물 균열관리현황을 파악하거나

작성 지시하지 않았고 아래 [표 6]과 같이 재시공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보수계획을 수립하는 등 감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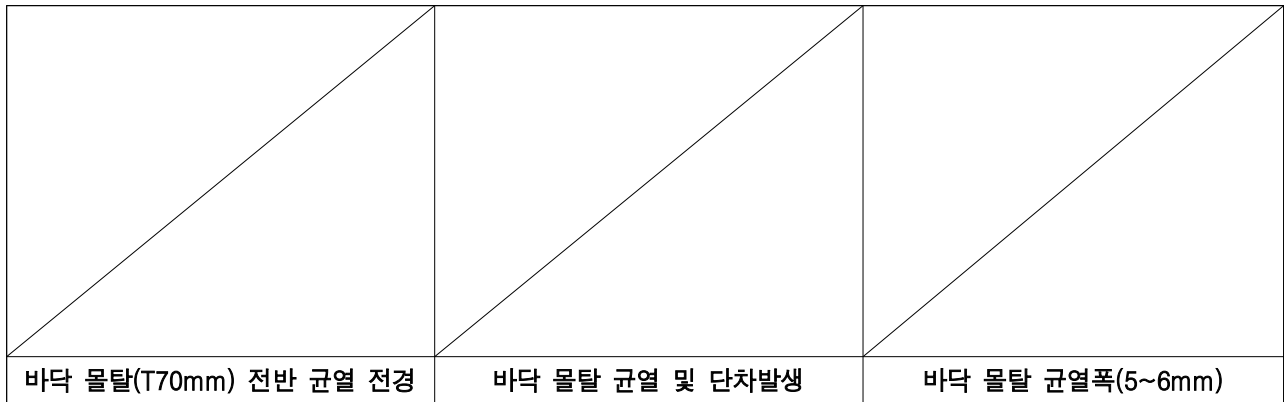
[표 6] 정원교육센터 균열 재시공 비용산출 현황

(단위 : 천 원)

품 명	규 격	수 량	비 용	비 고
계			12,487	
바닥깨기	인력 및 장비	300㎡	6,112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1:3, (시멘트모래포함)	112㎡	2,353	
모르타르(바닥)	T70	300㎡	3,753	
건설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9.13ton	269	

※ 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 정원교육센터 바닥 몰탈 균열발생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고, 공정별 품질시험기준에 맞게 품질시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과다 계상된 사업비 41,080,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관련자 AAA는 주의 처분하시고, BBB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상주시 ○○○○에서는 상주시 ☞☞면 ☞☞리 일원 ☞☞교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 업 량	공사금액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교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상주시 ☞☞면 ☞☞리	교량 재가설 L=613.0m, B=12.5m	41,221	15,400	25,821	2024.08.28. ~ 2027.10.28.	\$\$\$\$	2%
☞☞교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상주시 ☞☞면 ☞☞리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2,019	2,019	-	2022.03.29. ~ 2025.12.13.	\$\$\$\$	100%

1.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미실시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³²⁾에 대하여 해당 건설 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술인의 적정성, 과업 이행 결과의 적정성 및 과업 이행내용의 충실성 등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용역평가 결과를 평가 총괄표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용역

32)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물품 및 용역 2억 2천만 원)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³³⁾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착공일인 2024. 8. 28. 후 6개월 이내인 2025. 2. 23.까지 설계용역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용역평가를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용역금액이 2,019백만 원으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인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용역평가를 하지 않고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설계업무를 수행한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설 관련 기술과 경험을 평가하여 건설 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4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m³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 이용요령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33) 설계용역평가 위원별 평가표, 설계용역평가 결과표를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순성토 현황 등을 숙지하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 건설공사 현장 등과 토석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국토 환경훼손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관련 서류 검토·보고 시 공사착수 단계에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입력 및 갱신현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m³이상이 건설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현황을 숙지하고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본 공사의 사토·순성토량이 44,962m³으로 ‘토석정보 공유시스템(TOCYCLE)’ 입력 대상임에도 토석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인근 지역 현장간에 적정한 토석 이동·처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발주청·시공사 간의 토석수급 조율실패로 인한 공사지연 및 비효율적인 토석 운반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3. 지장물(한전주) 이설공사비 부가가치세 과오납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4-0-1(손해배상금 등)³⁴⁾」에 따르면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감사원 심사결정(2012년 감심 제147호)에 의하면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지장물(한전주 등) 이설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은 손실보상금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지장물(한전주 등) 이설비는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2025. 3. 20. 편입부지 내 한전주 이설에 따른 공사비 지급 시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공익사업임에도 부가가치세 2,651,85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34)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기본통칙-부가가치세법 4-0-1 [2011. 2. 1. 손해배상금 등])참조

4. 발주청 건설사업관리 업무 소홀 및 공사비 과다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자의 기본임무)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설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된 공정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교 교대보호블록이 관급자재 구매토록 계상되어 있으나 설치 단가에 자재대가 포함되어있음에 따른 중복계상 건(감액 9,230천 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기 납부하였으나 도급내역 PS단가에 중복계상 건(감액 44,877천 원), 환경관리비 집행가능한 살수차 운영비 중복계상 건(감액 8,000천 원), ♣♣교 진출입 도로가 신설도로임에도 설치기준 등 검토 없이 도급내역에 미끄럼방지 포장비 계상 건(감액 45,540천 원) 등 4건의 중복계상비용 107,647천 원(제경비 포함)이 도급내역에 과다 계상되어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점검의무를 소홀히 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설계변경 미이행 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법령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를 실시하시고 토석 정보공유시스템 입력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과오납한 부가가치세 2,651,850원은 회수하시기 바라며, 과다 계상된 사업비 107,647,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상주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상주시 ▼▼▼▼▼▼▼▼▼▼(구 ◆◆◆◆◆◆◆◆◆◆)³⁵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상주시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관리대행 용역 현황

(단위 : 백만 원)

계 약 명	과업내용	계약금액	계약일	대행기간	계약업체	비고
	공공하수처리시설 (26,000m ³ /일) 운영	2,940	1999.11.30.	1999.12.15. ~ 2002.12.14.		
	공공하수처리시설 (26,000m ³ /일) 운영	2,847	2002.12.14.	2002.12.15. ~ 2005.12.14.		
	공공하수처리시설 (26,000m ³ /일) 운영	2,790	2005.12.13.	2005.12.15. ~ 2008.12.14.		
	공공하수처리시설 (26,000m ³ /일) 외 12개소 운영	3,900	2008.12.09.	2008.12.15. ~ 2011.12.14.		
	공공하수처리시설 (26,000m ³ /일) 외 14개소 운영	4,386	2011.12.13.	2011.12.15. ~ 2014.12.14.		
	공공하수처리시설 (26,000m ³ /일) 외 17개소 운영	5,030	2014.12.15.	2014.12.15. ~ 2016.12.14.		
	공공하수처리시설 (26,000m ³ /일) 외 18개소 운영	17,125	2016.12.13.	2016.12.15. ~ 2021.12.31.		
	공공하수처리시설 (26,000m ³ /일) 외 30개소 운영	24,494	2021.12.31.	2022.01.01. ~ 2026.12.31.		

1. 보험료 사후 미정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르면 관리대행비는 인건비,

35) 2025.1.1. 조직개편 : ◆◆◆◆◆◆◆◆◆◆ → ▲▲▲▲▲▲▲▲, ▼▼▼▼▼▼▼▼▼▼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엔지니어링공제보험으로 구분하고 인건비 항목에 보험료를 포함하여 관리대행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대가를 지급 할 때에는 납입확인서 중 사업주 부담금액에 대하여 정산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준공 대가로 지급 할 경우에는 사업주 부담금액(총 납입금액의 1/2)에 대하여만 정산하되,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에 대하여는 현장 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상주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을 추진하면서 관리대행비에 산정된 보험료가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정산을 하여야 하는데도 매년 관리대행 용역비 지급 시 보험료 납부완료 확인서만 제출 받아 확인하고, 실제 납부된 증빙자료를 검토 및 확인하지 않는 등 보험료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는데도 이를 정산하지 않음으로써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표 2] ~ [표 8]과 같이 193,026천 원의 보험료가 과다 지급되었으며, 1999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³⁶⁾에 대해서는 보험료 과다 지급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었다.

36) 근로복지공단 전자 고지내역 발급 불가 및 내부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데이터 부재

[표 2] 상주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보험료 정산 내역 (2018년)

(단위 : 원)

구 분	보험료 반영액(A)	보험료 정산액(B)	부당지급액 (A-B)
건강보험료	149,898,252	37,379,640	26,562,862
국민연금보험료		40,837,170	
고용보험료		17,578,110	
산재보험료		27,540,470	
[보험료 소계]	149,898,252	123,335,390	26,562,862
일반관리비 (보험료 소계 × 9%)	13,490,843	11,100,185	2,390,658
이윤 ((보험료 소계+일반) ×10%)	16,338,909	13,443,558	2,895,352
부가가치세(10%) (보험료 소계+일반+이윤)×10%)	17,972,800	14,787,913	3,184,887
합 계	197,700,805	162,667,046	35,033,759

[표 3] 상주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보험료 정산 내역 (2019년)

(단위 : 원)

구 분	보험료 반영액(A)	보험료 정산액(B)	부당지급액 (A-B)
건강보험료	163,960,992	43,696,130	45,063,992
국민연금보험료		35,022,990	
고용보험료		18,867,460	
산재보험료		21,310,420	
[보험료 소계]	163,960,992	118,897,000	45,063,992
일반관리비 (보험료 소계 × 9%)	14,756,489	10,700,730	4,055,759
이윤 ((보험료 소계+일반) ×10%)	17,871,748	12,959,773	4,911,975
부가가치세(10%) (보험료 소계+일반+이윤)×10%)	19,658,923	14,255,750	5,403,173
합 계	216,248,152	156,813,253	59,434,899

[표 4] 상주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보험료 정산 내역 (2020년)

(단위 : 원)

구 분	보험료 반영액(A)	보험료 정산액(B)	부당지급액 (A-B)
건강보험료	218,836,932	62,058,650	33,901,452
국민연금보험료		76,608,230	
고용보험료		28,141,540	
산재보험료		18,127,060	
[보험료 소계]	218,836,932	184,935,480	33,901,452
일반관리비 (보험료 소계 × 9%)	19,695,324	16,644,193	3,051,131
이윤((보험료 소계+일반)×10%)	23,853,226	20,157,967	3,695,258
부가가치세 (보험료 소계+일반+이윤)×10%)	26,238,548	22,173,764	4,064,784
합 계	288,624,030	243,911,405	44,712,625

[표 5] 상주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보험료 정산 내역 (2021년)

(단위 : 원)

구 분	보험료 반영액(A)	보험료 정산액(B)	부당지급액 (A-B)
건강보험료	218,336,928	71,286,950	24,727,138
국민연금보험료		73,129,850	
고용보험료		31,326,760	
산재보험료		17,866,230	
[보험료 소계]	218,336,928	193,609,790	24,727,138
일반관리비 (보험료 소계 × 9%)	19,650,324	17,424,881	2,225,442
이윤 (보험료 소계+일반+이윤)×10%)	23,798,725	21,103,467	2,695,258
부가가치세(10%)	26,178,598	23,213,814	2,964,784
합 계	287,964,574	255,351,952	32,612,622

[표 6] 상주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보험료 정산 내역 (2022년)

(단위 : 원)

구 분	보험료 반영액(A)	보험료 정산액(B)	부당지급액 (A-B)
건강보험료	211,694,419	72,245,750	12,448,509
국민연금보험료		77,526,790	
고용보험료		31,586,330	
산재보험료		17,887,040	
[보험료 소계]	211,694,419	199,245,910	12,448,509
일반관리비 (보험료 소계 × 9%)	19,052,498	17,932,132	1,120,366
이윤 (보험료 소계+일반관리비)×10%	23,074,692	21,717,804	1,356,887
부가가치세(10%)	25,382,161	23,889,585	1,492,576
합 계	279,203,769	262,785,431	16,418,339

[표 7] 상주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보험료 정산 내역 (2023년)

(단위 : 원)

구 분	보험료 반영액(A)	보험료 정산액(B)	부당지급액 (A-B)
건강보험료	218,539,388	79,957,540	3,650,298
국민연금보험료		83,713,560	
고용보험료		35,092,560	
산재보험료		16,125,430	
[보험료 소계]	218,539,388	214,889,090	3,650,298
일반관리비 (보험료 소계 × 9%)	19,668,545	19,340,018	328,527
이윤 (보험료 소계+일반관리비)×10%	23,820,793	23,422,911	397,882
부가가치세(10%)	26,202,873	25,765,202	437,671
합 계	288,231,599	283,417,221	4,814,378

[표 8] 상주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보험료 정산 내역 (2024년)

(단위 : 원)

구 분	보험료 반영액(A)	보험료 정산액(B)	부당지급액 (A-B)
건강보험료	218,539,388	83,699,910	-4,880,312
국민연금보험료		86,862,010	
고용보험료		36,181,270	
산재보험료		16,676,510	
[보험료 소계]	218,539,388	223,419,700	-4,880,312
일반관리비 (보험료 소계 × 9%)	19,668,545	20,107,773	-439,228
이윤 (보험료 소계+일반+이윤)×10%	23,820,793	24,352,747	-531,954
부가가치세(10%)	26,202,873	26,788,022	-585,149
합 계	288,231,599	294,668,242	-6,436,643 (미 정산 대상)

2. 정산항목에 대한 물가 변동액 반영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정산항목은 [표 9]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7개 항목은 정산 시 이미 물가상승이 반영되므로 확인된 실적 정산 금액에 물가상승분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

[표 9] 계약금액의 정산항목 및 규정

정산항목	관 련 법 령
국민건강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국민연금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퇴직공제부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환경보전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상주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의 물가변동액을 반영하면서 [표 10]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항목에 대한 물가상승분 47,378천 원 상당을 정산조치 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에 걱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표 10] 정산항목 물가상승분 반영 현황

(단 위: 천 원)

부 서 명	계 약 명	회	물가상승분 반 영 액	정산항목 제외 물가상승분 반 영 액	정산항목 물가상승분 반 영 액	비고
▼▼▼ ▼▼▼		1회	405,117	368,088	37,028	
		2회	145,875	135,525	10,350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보험료 미정산(5개년) 98,557,964원, 물가상승분 부적정 47,378,000원, 합계 145,935,964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17 병합)는 주의 처분하시고, CCC, DDD(16 병합), EEE, FFF, GGG(16 병합)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상주시 ▼▼▼▼▼▼▼▼(구 ◆◆◆◆◆◆◆◆)³⁷⁾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상주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외 9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시군							
	상주		빗물펌프장 (1,500㎡/분) 오수관로 L=1.9km	17,819	2024.06.25.	2024.06.26. ~ 2027.07.07.		
	상주		오수관로 L=5.9km 배수설비 107가구	1,684	2024.07.03.	2024.07.10. ~ 2025.12.31.		
	상주		굴착교체 L=1.425km 비굴착보수 127개소	2,090	2023.02.16.	2023.02.27. ~ 2024.08.19.		
	상주		굴착교체 L=4.028km 비굴착보수 1,939개소	3,233	2023.02.21.	2023.03.02. ~ 2025.08.08.		
	상주		처리장 증설 (270㎡/일)	4,259	2021.12.28.	2022.01.05. ~ 2024.04.23.		
	상주		처리장 증설 (60㎡/일)	3,411	2022.12.05.	2022.12.13. ~ 2025.05.30.		
	상주		오수관로 L=14.826km 배수설비 357가구	5,191	2023.07.25.	2023.08.07. ~ 2026.01.22.		
	상주		침전지 증설 (7,000㎡/일)	2,390	2023.11.02.	2023.11.13. ~ 2025.11.11.		
	상주		처리장 증설 (100㎡/일)	711	2024.01.08.	2024.01.15. ~ 2025.07.07.		
	상주		오수관로 개량 L=1.32km	471	2023.09.11.	2023.09.11. ~ 2025.01.02.		

37) 2025.1.1. 조직개편 : ◆◆◆◆◆◆◆◆ → ▲▲▲▲▲▲▲▲, ▼▼▼▼▼▼▼▼

1.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수립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르면 발주청³⁸⁾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등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제1호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제2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제3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제4호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 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상주☞☞☞☞☞☞☞ 최종침전지 증설공사’, ‘☞☞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지구 하수관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임에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38)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

그 결과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달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계획을 부적정 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2. 건설공사 품질기술자 미배치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대하여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아래 [표 2]와 같이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때 건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고용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표 2]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시행규칙 별표5

공사분류	공사규모	시험장비	시험실 면적	품질기술자 배치기준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000억원 이상 연면적 5만㎡ 이상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검사장비	50㎡ 이상	특급1명, 중급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500~1000억원 이상 연면적 3만~5만㎡ 이상		"	고급1명, 중급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00~500억원 이상 연면적 5천~3만㎡ 이상		20㎡ 이상	중급1명, 초급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2~100억원		"	초급1명 이상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품질시험 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는 품질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서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설 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 종목·방법 및 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충주지구 하수관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주 시부터 품질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건설기술인이 배치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등 해당 공사의 품질관리 업무를 부적절하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적정한 현장기술자 배치를 통해 공사의 적정한 품질 확보 및 공정관리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게 되었다.

3. 안전관리 업무수행 부적정

가.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절차 미이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³⁹⁾하고 자료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조에 따라 발주청은 설계 발주 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요소 및 저감 대책을 바탕으로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안전 검토보고서와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설계성과 납품 품목에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하고 시공단계에서의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9)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굴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저감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충청지구 하수관로 확장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에 설계안전 검토보고서 등 문서를 제출하도록 설계성과를 납품 품목에 명시하지 않아 설계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미이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의2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4항에 따르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건설안전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사본과 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충청지구 하수관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임에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또한 이행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해 건설공사의 높질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해당 법령의 취지를 위반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4.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하수도법」 제34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 하여 오수가 하루에 10m³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 및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오수발생량(m³/일)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고, 납입기한은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허가, 승인 시에 완공예정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로 정하여 고지하며,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 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담금 부과에 법적근거, 금액, 납부방법 등을 고지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완공 예정일 전일까지 징수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고등학교의 농업계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⁴⁰⁾ 및 징수하였으나 2023.5.18. 기숙사동 증축(4860m²)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부터 상주시 ㉠㉠㉠로 통보⁴¹⁾는 되었으나, 타부서 공람이 되지 않아 변경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증축에 따른 오수 배출량 14.7m³/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⁴²⁾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5. 현장대리인 배치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 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인을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배치일 부터 7일 이내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40) ♣♣고등학교의 농업계고등학교로 전환에 따른 ♣♣하수처리장 증축(390m³/일 → 490m³/일)으로 원인자부담금 5억원 부과(2021.8.17.)

41) 경상북도 교육청 ▼▼▼-****(2023.5.8.)호로 ㉠㉠㉠에 학교시설사업 완료 통보

42) 원인자부담금 14.7m³/일 x 1,457,000원 = 21,417,900원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81조 제7호에 따라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시정 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제4호에 의거 제40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지구 하수관로 확장공사’에 원도급 회사(\$\$\$\$\$)의 현장대리인이 배치되지 아니하고 타 회사(\$\$\$\$\$)의 현장대리인⁴³⁾이

착공 시부터 현장관리 하는 등 당초 계약사항과 다르게 현장에 배치되고 있음에도 발주청에서는 착공서류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이 실제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현장에 품질관리자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도 건설사업자에게 시정지시를 하지 않는 등 현장 시공 관리, 품질 및 안전관리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6. 정산항목에 대한 물가 변동액 반영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하며 계약 시 당사자 간 계약문서 및 과업지시서에 직접경비에 대하여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하도록 되어 있는 현장 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등은 정산 시 이미 물가상승이 반영되므로 확인된 실적 정산 금액에 물가상승분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상주시 ▼▼▼▼▼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비의 물가변동액을 반영하면서 [표 3]과 같이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등)에 대한 물가상승분 22,428천 원 상당을 정산조치 하지 않는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43)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재건축공사 건축시공 부장으로 배치되어 있음

[표 3] 정산항목 물가상승분 반영 현황

(단 위: 천 원)

부 서 명	사 업 명	회	물가상승분 반 영 액	정산항목 제외 물가상승분 반 영 액	정산항목 물가상승분 반 영 액	비고
▼▼▼ ▼▼▼		1~3회	129,363	113,663	15,700	
		1~2회	131,959	125,231	6,728	

7. 공사원가 과다 계상 및 공사관리관 업무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에 따르면 공사 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 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 계획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 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설계의 변경) 규정에 의하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와 공법변경 및 투입 자재를 변경하여도 목적인 품질의 확보가 가능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경우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공사추진 시 공사가 설계도서 및 공정계획표 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공사 시행 단계별로 정밀히 확인·검측하여 공사시설물이 차질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초 설계에 공사물량 및 공사자재 등이 과다 산정되었거나 현장 여건의 변동 등으로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 검토 소홀

상주시 ▼▼▼▼▼에서는 상주시 ❀❀❀❀❀ ❀❀❀❀❀❀❀ ❀❀❀❀❀ ❀❀❀❀ 외 5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시 [표 4]에 해당하는 사항(가시설 되메우기 품 인력적용 등)에 대해 설계도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공사 예정가격 365,519천 원을 과다 계상하여 발주하였다.

[표 4] 설계도서 검토 소홀 사항

(단위 : 천 원)

공사명	지적사항	과다계상	비고
	• 가시설 되메우기 품 인력적용에 따른 과다계상 → 기계 경비 변경	65,340	
	• 가시설 향타 작업 품 과다계상 (천공품과 중복)	111,570	
	• 하수도 공정에 불필요한 관로 표시못 반영	18,181	
	• 안전관리비(경비성 항목) 노무비 비목으로 설계반영에 따른 과다계상	11,575	
	•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임에도 품질관리비 인건비 반영	9,519	
	• 안전관리비(경비성 항목) 노무비 비목으로 설계반영에 따른 과다계상	28,160	
	•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임에도 품질관리비 인건비 반영	9,519	
	• 예정가격 작성시 사급자재(STS 엘보) 단가 비교 검토 소홀	30,428	
	• 가시설 향타 작업 품 과다계상 (천공품과 중복)	45,767	
	• 안전관리비(경비성 항목) 노무비 비목으로 설계반영에 따른 과다계상	5,550	
	• 이행실태점검비용 과다계상	29,910	

나. 공사관리관 업무 소홀

상주시 ▼▼▼▼▼에서는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표 5]에 해당하는 사항(관로구간 터파기 폭 미정산 등)에 대해 공사관리관의 역할을 소홀히 하여 사업비(제경비 포함) 136,397천 원을 감액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표 5] 공사관리관 업무 소홀 사항

(단위 : 천 원)

공 사 명	지 적 사 항	과다 계상	비 고
	• 관로구간 터파기 폭 미정산 B=1.2~1.8m(설계) → 0.95~1.4m(시공)	28,850	
	• 감리 가설사무실 중복반영에 따른 미변경	14,250	
	• 지수판 설치 방식 미변경 용접식(설계) → 소켓식(변경)	8,443	
	• 관로구간 터파기 폭 미정산 B=1.34~1.38m(설계) → 1.2~1.25m(시공)	41,267	
	• 사토처리 및 운반거리 미정산 운반거리 L=10km → 0.85km 변경	15,998	
	• 토사 현장적치에 따른 현장 →임시적치장 운반수량 미변경 (4,170m³ → 2,160m³)	27,589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9,519,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회수**하시고,
- ③ 과다 계상된 사업비 **480,822,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미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시고, 현장대리인 배치 부적정(타회사 건설기술인 배치), 품질대리인 미배치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 기본법」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⑤ 관련자 AAA, BBB는 주의 처분하시고, CCC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교량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상주시 ●●●●●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하천정비 L=1.1km, 교량4개소 등	4,952	2021.12.03.	2021.12.07. ~ 2026.03.25.		
			교량 가설 B=7.5m,L=60m	2,013	2023.12.14.	2023.12.18. ~ 2026.04.23.		
			교량 가설 B=7.5m,L=74m	1,981	2023.11.28.	2023.12.05. ~ 2025.09.18.		

1. 설계변경 심사 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제2절 및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에 따르면 시·군 사업 중 도비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설계변경 심사를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의 적절성 및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가시설 변경 등의 사유로 아래 [표 2]와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2회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 후 변경계약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계약금액 증액에 대한 설계변경 심사를 받지 않았다.

[표 2] 설계변경 현황

(단위: 천 원)

공 사 명	사업기간	계약일자	계약금액	증감액	증감률	비고
♀♀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1.12. 07.~ '24. 9. 20.	'21.12.03.	3,773,300			최초계약
		'23.12.07.	4,379,620	증 606,320	증 16.07%	1회 변경 (심사)
		'24.08.22.	4,631,500	증 251,880	증 5.75%	2회 변경 (미심사)
		'25.02.07.	4,704,000	증 72,500	증 1.56%	3회 변경 (심사)

그 결과 지방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해당 법령의 취지를 위반하게 되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2.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수립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르면 발주청⁴⁴⁾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등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계획에는 제1호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제2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 관리방식 제3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제4호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를 발주 하는 경우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천 통행교량 정비사업’, ‘○○○(○○○) 세월교 재해위험교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임에도 불구하고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그 결과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44)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

달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계획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3.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법선정위원회 심의방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2절-제3관에 따르면 사업 부서 담당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고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제안참여자에게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참여자는 공법 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 천 통행교량 정비사업’에 필요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해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이 공정하게 회의를 주관하여 위원들이 제안서를 평가하도록 하고 제안사가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은 제안사에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법평가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였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해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 심의를 서면으로 실시하여 제안참여자에게는 공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공법선정심의위원들에게는 공법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게 되어 위원회가 심도 있고 공정하게 평가되지 않게 되었다.

4.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정량평가 방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2절-제2관-6에 따르면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아래 [표 3]과 [표 4]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표]에서 정하고 있다.

[표 3]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예시)	평가기준(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공사비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20	▪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시공성	- 공사기간 -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80	▪평가위원이 평가
	안전성	- 구조적 안전성 - 내구·내진·내화·내습성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유지관리	- 하자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용이성 -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경관성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 외부마감 상태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표 4] 공사비 평가(기준에서 정한 공사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평가 요소	등 급	평 점
공사비	◦ 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용 /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A. 90% 미만	10.0
		B. 90% 이상 95% 미만	9.0
		C. 95% 이상 100% 미만	8.0
		D. 100% 이상 105% 미만	7.0
		E. 105% 이상	6.0

그리고 같은 기준 제4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공법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며 공사에 적용될 공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해당 공사에 적용하려고 하는 신기술·특허공법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별표]에 따라 평가기준을 확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에 적용될 공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하여야 하였다.

가. 정량평가 기준 적용 부적정

그런데도 상주시 ○○○○○에서는 해당공사에 적용하려는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변경 적용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 과정 없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아래 [표 5] ~ [표 6]과 같이 시공실적, 기술보유, 지역가점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공법선정에 필요한 정량평가가 적정하게 평가되지 못하게 하였다.

[표 5] 정량(객관적)평가 기준

사업명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계			22	
☞☞☞ 통행교량 정비사업	공사비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10	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10	
	가 점	(시종점)교대부 적용 형고 가점 - 1.1m 이하 : 2점 / 1.1m 초과 ~ 1.2m 이하 : 1점 1.2m 초과 : 가점 없음	2	

[표 6] 정량(객관적)평가 기준

사업명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계			26	
☞☞☞(☞☞☞) 세월교 재해위험교량 정비사업	공사비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10	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10	
	가 점	(시종점)교대부 적용 형고 가점 - 1.4m 이하 : 3점 / 1.4m 초과 ~ 1.6m 이하 : 2점 1.6m 초과 ~ 1.8m 이하 : 2점 (시공실적) - 10건이상 : 3점 / 10건미만~5건이상 : 2점 5건미만~3건이상 : 1점	6	

나. 공사비 평가방법 부적정

그리고 상주시 ○○○○○에서는 ‘○○○ ○○○천 통행교량 정비사업’, ‘○○○○ (○○○○) 세월교 재해위험교량 정비사업’에 적용하려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사비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대비 최저 비율(85% 미만, 110% 이상 등)의 공사비를 제안한 참여자에게 최하점을 부여하는 등 아래 [표 7]과 같이 자체적으로 정한 공사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공법제안 평균 공사금액보다 저렴하게 공사비를 제안한 제안참여자에게 최저 및 낮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평가기준을 확정·공고하여 제안참여자로부터 공법 제안서⁴⁵⁾를 접수하였다.

[표 7] 공사비 평가(자체 평가기준)

사업명	배 점(10점)				
	80~100%	100~110%	110~120%	120~130%	130%이상 또는 80%미만
○○○ ○○○천 통행교량 정비사업	10.0	9.0	8.0	7.0	6.0
○○○○(○○○○)세월교 재해위험교량 정비사업	20.0	18.0	16.0	14.0	12.0

또한,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8]과 같이 해당 공사에 적용하려는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산출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법 제안자 평균 공사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제안참여자가 제시한 공사비 중 최고 및 최저 공사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평균으로 제안 평균 공사금액 산출기준을 확정·공고하여 제안참여자로부터 공법 제안서를 접수하였다.

[표 8] 평균 공사금액 산정(자체 평가기준)

순번	사업명	평균 공사금액 산정	비 고
1	○○○ ○○○천 통행교량 정비사업	최고가 및 최저가 제외한 제안금액 평균 (5개 이하인 경우 전체 제안금액 평균)	
2	○○○○(○○○○)세월교 재해위험교량 정비사업		

45) 공법 제안서 : 제안 참여자가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평가 시 ‘**충청 천** 통행교량 정비사업’의 신기술·특허공법의 경우 특허 공법 제안사인 \$\$\$\$\$\$(주), ‘**충충충(충충충)세월교** 재해위험교량 정비사업’의 특허공법의 경우 (주)\$\$\$\$\$\$의 정성적 평가⁴⁶⁾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결과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발주부서)	제안사명	추정금액 (선정공고 시)	제안 참여사 제안 금액	평균 공사비 대비 비율(%)		공사비 평가 점수		비고
				자 체 기 준	평 가 기 준	자 체 기 준	평 가 기 준	
충충 충청 통행교량 정비사업		400	335	109.25	106.25	7	6	
			295	96.21	93.56	9	9	2차 평가
			270	88.05	85.63	10	10	2차 평가
			326	106.51	103.58	7	7	
			295	96.43	93.78	9	9	정성평가 기회 박탈
			287	93.86	91.28	10	9	2차 평가
			282	91.97	89.44	10	10	2차 평가
			438	143	139.07	6	6	
			295	96.4	93.75	9	9	2차 평가
			326	106.35	103.42	7	7	
			315	103.02	100.19	8	7	
충충충(충충충) 세월교 재해위험교량 정비사업		420	295	79.57	78.56	12	20	2차 평가
			468	126.16	124.56	12	12	
			356	96.23	95.01	18	16	2차 평가
			391	105.46	104.12	14	14	
			335	90.47	89.32	20	20	2차 평가
			480	123.39	127.75	12	12	
			303	81.68	80.64	12	20	정성평가 기회 박탈

46) 제안업체 중 1차(정량)평가 결과 3~5개 업체를 선정하여 2차(정성)평가 대상으로 선정

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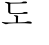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려면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8조, 제4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 착공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회신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 방안과 본 협의내용을 사업승인 시 반영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사무소에 협의의견과 평가서의 저감방안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며, 수시로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착공 등을 하려는 경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를 추진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착공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수시로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지 않는⁴⁷⁾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6. 품질관리자 현장 이탈 등 품질관리 업무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같은 법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 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총 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하며, 같은 법 제5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47) 협의내용에 따르면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 침사지, 세륜세차시설 설치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반영

건설공사(이하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 장비를 구비하고, 20m² 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르면 건설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현장에 기술인을 배치하여 「건설공사 품질 관리 업무지침」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 종목·방법 및 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세월교 재해위험교량 정비사업’을 추진 하면서 총 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초급품질관리에 해당되는 공사임에도 품질시험기구를 비치하지 않았으며,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된 품질관리자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현장을 무단이탈하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 하게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막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위반하였다.

7. 공사원가 과다 계상 및 공사감독 업무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에 따르면 공사 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 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 계획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설계의 변경) 규정에 의하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와 공법변경 및 투입 자재를 변경하여도 목적인 품질의 확보가 가능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경우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공사추진 시 공사가 설계도서 및 공정계획표 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공사 시행 단계별로 정밀히 확인·검측하여 공사시설물이 차질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초 설계에 공사물량 및 공사자재 등이 과다 산정되었거나 현장 여건의 변동 등으로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주시 ○○○○○에서는 ‘○○○ ○○○천 통행교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서에 반영된 세륜세차시설을 미설치하였으며, 가설사무실이 조립식으로 반영되어 있는데도 컨테이너 설치로 현장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사업비 35,039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월교 재해위험교량 정비사업’의 경우 가시설 작업 준비 및 근입품을 설계변경 시 중복 계상(13,945천 원(제경비 포함))하여 설계변경 하였으며, 가도 설치 시 일부 현장 유흥토를 이용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비 24,224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73,208,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고,(시정)
- ③ 품질대리인 현장이탈 등 위반행위에 대해 「건설산업 기본법」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④ 관련자 AAA, BBB는 **주의** 처분하시고, CCC, DDD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동 공원 보행육교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상주시 ◇◇◇◇(구 ▽▽▽▽▽⁴⁸)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동 공원 보행육교 설치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1] 공사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동 공원 보행육교 설치공사		☞☞동	보행육교 L=183.7m, B=4.0m	3,925	24.12.12.	24.12.23~25.12.22		

1.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12절-제2관-가, 나에 따라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공법에 대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설계에 반영 시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공법적용 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 공원 보행육교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특정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문(상주시 공고 제*****-***호) 1-마-3)에 따라 공법

48) 조직개편으로 담당업무 이관(▽▽▽▽▽→◇◇◇◇)

제안 규모를 아래 [표 2]와 같이 정하였으며, 특히, 공고문 1-마-8)에 따라 공법 제안 시 선형 및 경간장 변경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 2] 신기술·특허공법 개요

사업명	공법명	공법제원	사업비 (억원)	공고번호	위원회 개최방법	협약일	비고
☼☼동 공원 보행육교 설치공사	강관 거더교 (보도교)	L=125m, B=4m (횡단교량 3경간)	25	상주시 공고 제****-***호	서면 (22.7.18~7.21)	2024.11.13.	

또한, 공고문 6-버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된 특정 공법사는 향후 교량의 디자인 결정을 위한 디자인을 설계사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 최종 설계 완료시까지 검토해 주어야 하며 디자인 심의를 통해 결정된 안을 교량에 접목시켜 교량설계를 하여야 한다고 공고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구 △△△△△)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12절-제2관-가, 나에 따라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공법에 대해 설계에 반영 시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공법적용 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동 공원 보행육교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특정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문(상주시 공고 제****-***호) 1-마-3)에서 확정된 제안 규모를 고려하여 공법 선정, 설계 반영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고문 6-버 특정공법 선정 이후 디자인 심의를 통해 안을 교량에 접목시켜 교량설계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공법 선정 이후 디자인 공모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동 공원 보행육교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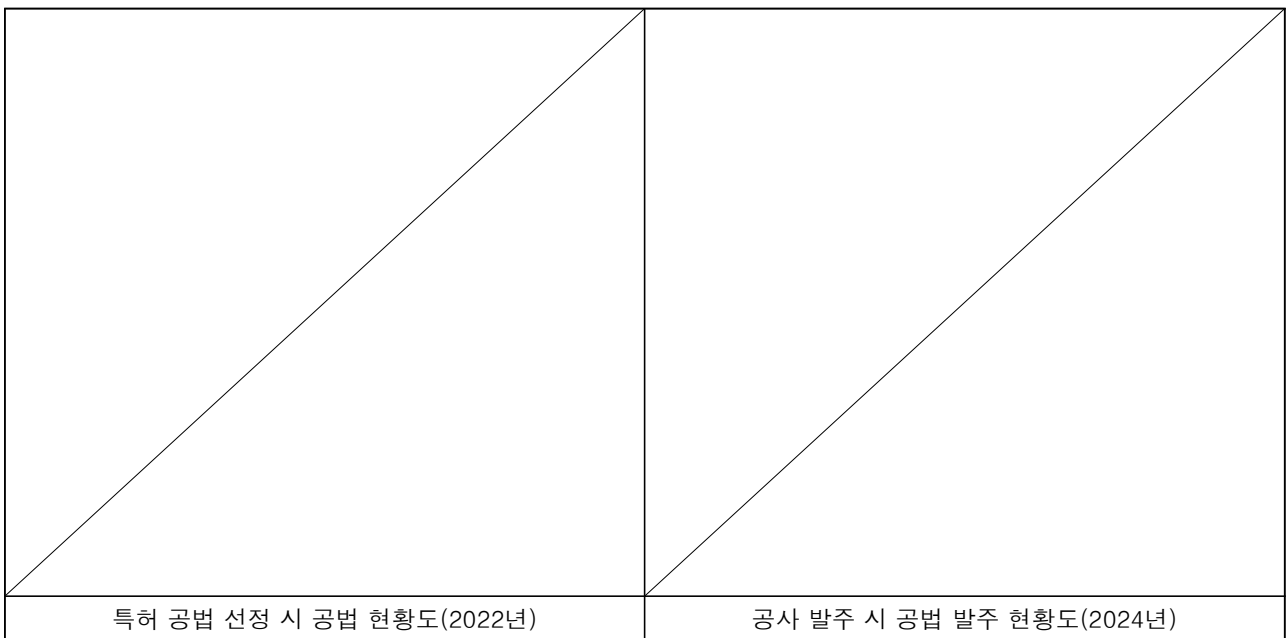
특정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문(상주시 공고 제****-***호)에 따라 선정된 공법에 대해 최종 설계에 반영 시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공법 적용 방법, 제안 규모 등 제안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특히, 공고문 6-버에 따라 특허공법 선정 이후 디자인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그림] 및 [표 3]과 같이 공법선정위원회로 선정한 공법 선형과 경관장 등 공법제원을 변경하여 최종설계 반영 및 공사를 발주하는 등 직접 공사비 399,771천 원이 증액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신기술·특허공법 비교

(단위 : 천 원)

구분	공법 제원				직접공사비	비고	
	연장(폭)	경간	경간장	형고			
강관거더	공법선정 (2022년)	L=125m(B=4m)	3	50*2=100.0m / 25*1 = 25m	1.4m	1,305,617	
	공사발주 (2024년)	L=162.6m(B=4m)	7	20*4=80.0m / 21.95*2=43.9m / 38.7*1=38.7m	1.1m	1,705,388	

[그림] 신기술·특허공법 현황도



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정량평가 방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2절-제2관-6에 따르면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아래 [표 4]와 [표 5], [표 6]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표]에서 정하고 있다.

[표 4]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예시)	평가기준(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공사비	- 제안 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20	▪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시공성	-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80	▪평가위원이 평가
	안전성	-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유지관리	-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경관성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표 5] 공사비 평가(기준에서 정한 공사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평가 요소	등 급	평 점
공사비	◦ 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용 /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A. 90% 미만 B. 90% 이상 95% 미만 C. 9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05% 미만 E. 105% 이상	10.0 9.0 8.0 7.0 6.0

[표 6] 경영상태 평가(기준에서 정한 공사비 평가기준)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 AA-	A1	①의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0, A-	A2+, A20, A2-	①의 A+, A0,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0, BBB-	A3+, A30, A3-	①의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0	B+	①의 BB+, BB0에 준하는 등급	10.0
BB-	B0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0, B-	B-	①의 B+, B0,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6.0

그리고 같은 기준 제4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공법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며 공사에 적용될 공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구 △△△△△)에서는 해당 공사에 적용하려고 하는 신기술·특허공법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별표]에 따라 평가기준을 확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에 적용될 공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가. 정량평가 기준 적용 부적정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해당공사에 적용하려는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기술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변경 적용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 과정 없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아래 [표 7]과 같이 시공실적, 지역가점 등을 평가 항목에 추가하여 공법선정에 필요한 정량평가가 적절하게 평가되지 못하게 하였다.

[표 7] 정량(객관적)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계		20	
공사비	- 제안 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8	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5	
시공실적	- 최근 10년간 시공실적 건수 및 금액 · 20건 또는 50억 이상 : 6점 · 20건미만~10건이상 또는 30억이상 : 5점 · 10미만~5 이상 또는 20억이상 : 4점 · 5건미만 또는 20억미만 : 3점	6	
지역업체	- 특허신기술을 경상북도 지역 내 등록한 기업(1점) - 전용실시권을 경상북도 지역 내 등록한 기업(0.5점)	1	

나. 공사비 평가방법 부적정

그리고 상주시 ◇◇◇(구 △△△△△)에서는 ‘♣♣동 공원 보행육교 설치공사에 적용하려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사비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대비 최저 비율(80% 미만 등)의 공사비를 제안한 참여자에게 최하점을 부여하는 등 아래 [표 8], [표 9]와 같이 자체적으로 정한 공사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공법제안 평균 공사금액보다 저렴하게 공사비를 제안한 제안참여자에게 최하점을 부여하도록 평가기준을 확정·공고하여 제안참여자로부터 공법 제안서⁴⁹⁾를 접수하였다.

[표 8] 공사비 평가(자체 평가기준)

배 점(8점)				
95%이상~100%미만	90%이상~95%미만 100%이상~105%미만	85%이상~90%미만 105%이상~110%미만	80%이상~85%미만 110%이상~115%미만	80%미만~115%이상
8.0	7.5	7.0	6.5	6.0

[표 9] 경영상태 평가(자체 평가기준)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0, AA-	A1	①의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5.0
A+, A0, A-	A2+, A20, A2-	①의 A+, A0, A-에 준하는 등급	5.0
BBB+, BBB0, BBB-	A3+, A30, A3-	①의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	5.0
BB+, BB0	B+	①의 BB+, BB0에 준하는 등급	5.0
BB-	B0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4.9
B+, B0, B-	B-	①의 B+, B0, B-에 준하는 등급	4.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3.0

♣♣동 공원 보행육교 설치공사

따라서 아래 [표 10]과 같이 공사비, 경영상태, 시공실적, 지역업체 정량평가에서 (주)\$\$\$\$\$\$ 18점, (주)\$\$\$\$\$ 17점을 부여받아 정성평가 합산 결과 (주)\$\$\$\$\$ 대비 425 백만 원 높은 금액을 제안한 (주)\$\$\$\$\$\$\$\$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적용 시 아래 [표 11]과 같이

49) 공법 제안서 : 제안 참여자가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공법 선정 최종 선정 제안사가 (주)\$\$\$\$\$\$에서 (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상주시 기준)

구 분		(주)\$\$\$\$\$\$	(주)\$\$\$\$\$	(주)\$\$\$\$\$\$\$\$	(주)\$\$\$\$\$\$\$	(주)\$\$\$\$\$	\$\$\$\$\$(주)	
정량평가	경제성	제안금액 (백만원)	1,950	1,525	1,417	2,237	1,422	2,027
		비율 ⁵⁰⁾	108.8%	85.0%	79.0%	124.8%	79.3%	123.1%
		점 수	7	7	6	6	6	6
	경영 상태	등 급	BB+	BBB-	BB0	BBB-	BB-	B+
		점 수	5	5	5	5	4.9	4.8
	시공실적		6	5	6	3	3	4
	지역업체		0	0	0	0	1	0
정량평가 점 수		18	17	17	14	14.9	14.8	
정성평가 점 수		71.5	71	65.5	60.4	58.7	57.9	
합 계		89.5	88.0	82.5	74.4	73.6	72.7	
순 위		1	2	3	4	5	6	

[표 1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구 분		(주)\$\$\$\$\$\$	(주)\$\$\$\$\$	(주)\$\$\$\$\$\$\$\$	(주)\$\$\$\$\$\$\$	(주)\$\$\$\$\$	\$\$\$\$\$(주)	
정량평가	경제성	제안금액 (백만원)	1,950	1,525	1,417	2,237	1,422	2,027
		비율 ⁵¹⁾	108.8%	85.0%	79.0%	124.8%	79.3%	123.1%
		점 수	6	10	10	6	6	6
	경영 상태	등 급	BB+	BBB-	BB0	BBB-	BB-	B+
		점 수	10	10	10	10	9.8	9.6
	정량평가 점 수		16	20	20	16	19.8	15.6
정성평가 점 수		71.5	71	65.5	60.4	58.7	57.9	
합 계		87.5	91	85.5	76.4	78.5	73.5	
순 위		2	1	3	5	4	6	

그 결과 상주시 ◇◇◇(구 △△△△△)에서는 1,525백만 원을 제안한 (주)\$\$\$\$\$ 대신 (주)\$\$\$\$\$\$\$\$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업비 425백만 원의 높은 공법이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0) 해당공법제안자 공사비용/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최저,최고금액 제외한 평균 공사금액)

51) 해당공법제안자 공사비용/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최저,최고금액 제외한 평균 공사금액)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는 주의 처분하시고, BBB, CCC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 ③ 관련자 DDD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상주 ☞☞천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상주시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상주 ☞☞천 ☞☞습지 복원사업 외 1건을 추진하였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상주 ☞☞천 ☞☞습지 복원사업			흙깍기 480,663㎡, 흙쌓기 405,822㎡, 스톤넛트 35,785㎡, 조경식재 등 1식	15,127	'22.09.06.	'22.09.20.~ '25.09.03.		
상주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흙깍기 184,627㎡, 사토 140,272㎡, 헌신보 등 1식	8,000	'24.07.08.	'24.07.17.~ '26.07.02.		

1.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 부적정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경우 하천관리청에게 하천기본계획 적합성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은 하천공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하천관리청은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또는 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하천공사 인가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15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하천공사 시행 전 하천관리청에게 하천기본계획 적합성을 검토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상주 ☁☁천 ☁☁습지 복원사업, 상주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전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적정하게 공사를 착수, 시행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수재해를 예방하고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달리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처리 과정 등이 부적정 하게 추진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부적정

「환경영향평가법」 제48조, 제4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착공 등을 하려는 경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며, 협의내용과 평가서의 저감 방안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 하고, 기록·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상주 ☁☁천 ☁☁습지 복원사업, 상주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착공일 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착공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3. 건설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같은 법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 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총 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하며, 같은 법 제5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90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상주 ☞☞천 ☞☞습지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로서 품질시험계획 승인 전에 품질시험이 필요한 축제공(성토용 흙)을 시공하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 등 승인규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선시공 되어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해당 법령의 취지를 위반하게 되었다.

4. 설계변경 부적정 등 공사비 과다 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상주 ❀❀천 ❀❀습지 복원사업

그런데도 상주시 ▶▶▶▶▶에서는 “상주 ❀❀천 ❀❀습지 복원사업”를 추진하면서 ① 경화토포장(건식) 시공 시 기존 지반을 첨가제를 이용하여 교란하는 공정으로 유로폼이 불필요함에 따라 74,500천 원(제경비 포함) ② 정산항목 물가 상승액을 부적정하게 반영하여 51,600천 원 ③ 가설사무실 축조에서 임대로 변경함으로 40,210천 원(제경비 포함) ④ 시공상세도 미작성으로 14,838천 원(제경비 포함) ⑤ 지붕트러스 구조 아닌 경량형 철골조 조립설치로 내력식에서 비내력식으로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7,709천 원(제경비 포함) 총 공사비 188,857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 조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나. 상주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상주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를 추진하면서 경화토포장(건식) 시공 시 기존 지반을 첨가제를 이용하여 교란하는 공정으로 유로폼이 불필요함에 따라 202,554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 조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달리 공사비를 부적정 하게 산출하여 사업비(391,411천 원)가 과다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391,411,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상주 〰〰〰〰 〰〰〰〰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상주시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상주 〰〰〰〰 〰〰〰〰 조성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상주 〰〰〰〰 〰〰〰〰 조성공사	/	/	파크골프장 1식(36홀)	1,007	2023. 12. 4.	2023. 12. 11. ~ 진행중	/	

1. 공사 전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에 따라 사업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경관법」 제26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하천시설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⁵²⁾에 따라 건설공사 지역에

52) 공사 착공(2023.12.11)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9703호) 제6조 적용

국가유산이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공사 착공 전 사전 행정절차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각 법률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상주 ☁☁☁☁ ☁☁☁ 조성공사 착공 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하지 않고 사업을 착공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부적정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46조에 따르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8조, 제4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 □□□□□□-****(****. *. *.)호로 회신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협의의견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사업승인 시 반영하고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사무소에 협의의견과 평가서의 저감방안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며, 수시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착공 등을 하려는 경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며, 협의내용과 평가서의 저감 방안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기록·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상주 ☞☞☞☞ ☞☞☞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①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오탁방지막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미반영 및 미시공 ② 관리대장 미비치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3. 건설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같은 법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 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총 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하며, 같은 법

제5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이하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 장비를 구비하고, 20㎡ 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90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시험 계획과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품질관리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상주 ☹☹☹☹ ☹☹☹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임에도 ① 품질시험실 미설치, ② 품질관리자 미배치, ③ 품질계획서 미승인, ④ 공사 품질관리 미이행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설계변경 부적정 등 공사비 과다 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상주 ☞☞☞☞ ☞☞☞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① 사토 운반 없이 잔토 처리함 따라 5,707천 원(제경비 포함) ② 마사토 부설 이후 로울러 다짐 미시공에 따라 447천 원 등 총공사비 6,154 천 원을 감액 조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5. 공사감독 업무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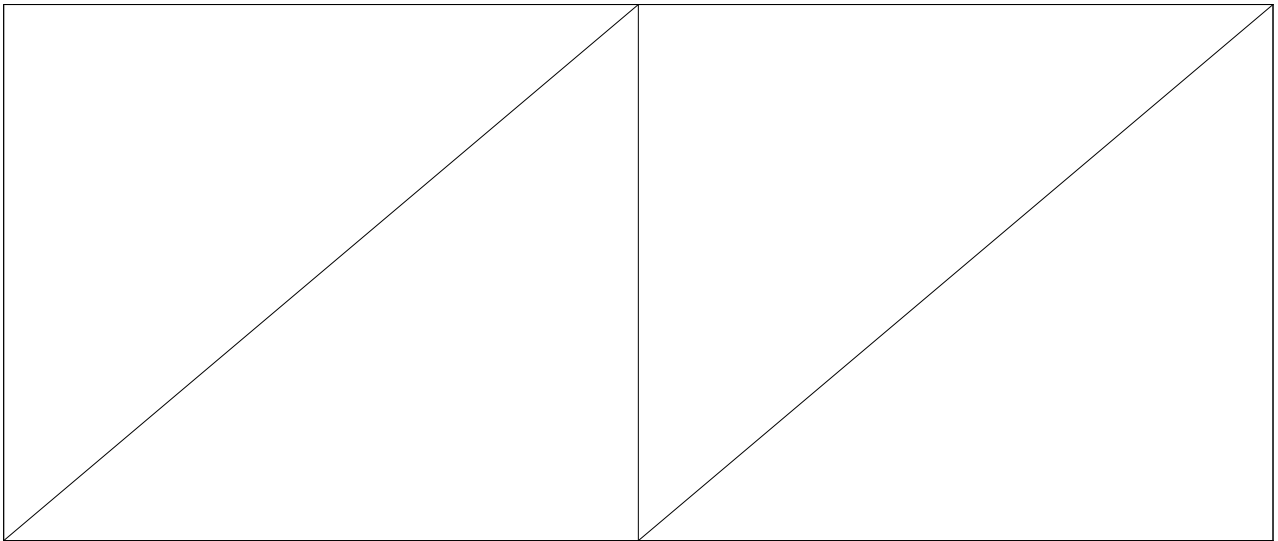
그리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에 따르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 제138조 및 제14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 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해당 공사의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 목적물이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감사일 현재 현장 확인 결과 위 부서에서는 “상주 ㉸㉸㉸㉸ ㉸㉸㉸ 조성사업”을 추진하면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설계 내역서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시방서에서 잔디 식재 시 배토 및 전압 작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작업을 하지 않는 등 공사 목적물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작업 단계별 시공상태 확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잔디 일부가 고사하였고, 재시공⁵³⁾ 비용 약 41,700천 원이 발생되게 하였다.

[사진] 부적정 시공 현황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품질관리와 관련한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53) 잔디 사이 메꿈 시공 A=3,600㎡, 잔디블럭 잔디 재시공 A=1,400㎡, 배수불량에 따른 잔디 재시공 A=1,200㎡

③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고사한 잔디에 대해 재시공하기 바라며, 과다 계상된 사업비 6,154,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④ 관련자 AAA는 주의 처분하시고, BBB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상주 ㉸㉸㉸ ㉸㉸㉸㉸㉸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상주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상주시 ㉸㉸㉸㉸㉸(구 ㉸㉸㉸㉸㉸)54)에서는 “상주 ㉸㉸㉸ ㉸㉸㉸㉸㉸ 건립공사”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공사 추진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사업명	도급자	계약금액 (변경)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비고
설계용역	상주 ㉸㉸㉸ ㉸㉸㉸㉸㉸ 건립공사		707,000	21.05.21.	21.05.27.	22.04.14.	설계 공모
공사			6,524,082 (7,216,036)	22.01.27.	22.02.24.	23.08.28.	
건설사업 관리			1,226,992 (1,344,000)	22.02.11.	22.02.23.	23.09.26.	

* 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산정 부적정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8조에 따르면 건축설계업무 대가의 산출은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 및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아래 [표 2], [표 3]에 따른 공사비요율(공사비×요율)⁵⁵⁾ 또는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기준 제11조에 따르면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인테리어 설계업무를

54) 2024. 1. 1. 조직개편(도서관 업무 이관 ㉸㉸㉸㉸ → ㉸㉸㉸㉸㉸)

55) 공사비 :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요율 : 공사비가 증가됨에 따라 건축설계 대가요율은 감소

증가된 대가만을 추가하여야 하며, 인증 관련 설계업무 중 2개 이상의 인증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에 추가 대가요율은 산정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아래 [표 4]와 같이 총공사비에 대한 설계대가를 산정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과업인 인테리어 설계업무 대가를 합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공사에 대한 설계대가와 인테리어에 대한 설계대가를 따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대가를 산정하여 사업비 7,730천 원의 예산을 과다 계상하였다.

[표 4] 설계용역비 산정

(단위 : 천 원)

구 분	공사내용	공사비 (부가세 포함)	산정방식		산정금액	비고
			비목	산정식		
자체 산정	본공사	9,300,000	설계용역비(A)	$8,454,545 \times 4.684\%$	396,011	
			인증관련비(B)	$A \times (9\% + 8\% / 2)$	51,481	
			손해배상보험료(C)	$(A/2) \times 0.477\% \times (1 - 0.01)$	935	
			부가세(D)		44,843	
			계(A+B+C+D)		493,270	
	인테리어 공사	2,500,000	설계용역비(A)	$2,272,727 \times 5.119\% \times 1.5$	174,511	
			손해배상보험료(B)	$(A/2) \times 0.503\% \times (1 - 0.01)$	435	
			부가세(C)		17,495	
			계(A+B+C)		192,441	
	합 계					685,711
재산정	본공사	11,800,000	설계용역비(A)	$10,727,272 \times 4.639\%$	497,638	
			인테리어(B)	$(2,272,727 \times 4.639\% \times 1.5) - (2,272,727 \times 4.639\%)$	52,716	
			인증관련비(C)	$A \times (9\% + 8\% / 2)$	64,693	
			손해배상보험료(D)	$(A+B) / 2 \times 0.477\% \times (1 - 0.01)$	1,299	
			부가세(E)		61,635	
			계(A+B+C+D+E)		677,981	
총 감				685,711 - 677,981	7,730	

* 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여 사업비 7,730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용역의 발주검토 소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19호)에 따르면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지질관련 용역에 한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⁵⁷⁾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지질관련 용역에 한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 등의 방법으로 분리발주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상주 ☁☁☁ ☁☁☁☁☁ 건립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품목(1천만 원 이상의 지질조사) 비용이 계상되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 등의 방법으로 분리발주를 검토하여야 하나 지반조사용역(추정가격

57)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하려는 경우
4.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12,169천 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공동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중소기업자의 입찰 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하도급 적정성 검토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산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아래 [표 5]와 같이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 5] 하도급 관리 체계 및 관련 규정

구 분	관련 규정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처 (공공기관)	비고
하도급 계약관리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계약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 계약 통보의 적정성 심사 기준 등	·하도급 체결 시 발주자에게 통보 등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 미통보 시 통보가능 등	·통보받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기타(공사 내규) ·하도급 계약 통보 관리 등				

가. 하도급 현장배치기술자 검토 소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하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공사에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⁵⁸⁾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8) 공사에정금액 30억원 미만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등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사에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는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 [표 6]과 같이 시공자가 현장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습식·방수공사에 대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하도급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누락하여 건설기술자의 교체 등의 보완 조치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6] 하도급 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 원)

공종	상호	하도금액	공사기간	현장배치 기술자	자격요건 적정여부	보험료 반영 여부	하도급 적정성 검토여부	비고
파일공사		236,720	22.04.01. ~ 22.09.30.	*** (토목 초급기술자)	적격	미반영	부	
기계설비공사		213,015	22.05.16. ~ 23.08.28.	*** (기계설비 초급기술자)	적격	반영	부	
철근 콘크리트공사		883,960	22.05.25. ~ 23.04.30.	*** (건축 초급기술자)	적격	반영	부	
습식·방수공사		325,886	22.11.14. ~ 23.08.28.	*** (기능사)	부적격	반영	부	직무경력 3년미만
수장공사		1,183,160	23.02.01. ~ 23.08.28.	*** (건축 고급기술자)	적격	반영	부	
석공사		330,000	23.03.06. ~ 23.08.28.	*** (건축 중급기술자)	적격	반영	부	
도장공사		71,687	23.03.21. ~ 23.08.28.	*** (건축 초급기술자)	적격	반영	부	
가스배관공사		17,160	23.03.24. ~ 23.08.28.	*** (가스 초급기술자)	적격	반영	부	
유리공사		173,800	23.08.16. ~ 23.08.28.	*** (건축 특급기술자)	적격	미반영	부	1개월 미만

* 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부적정한 하도급 현장배치기술자가 선임되어 공사현장 시공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해당 법령의 취지를 위반하게 되었다.

나. 하도금액 산출내역서에 사회보험료 미반영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료는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하도급계약체결 시 공사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의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위 [표 6]과 같이 하도급공사 중 파일공사에 대한 시공자로부터의 하도급계획서 제출 시 보험료 반영 여부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를 누락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사회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4. 공사 중 안전관리 업무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따르면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⁵⁹⁾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 및 관계전문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1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명시하도록 명시된 시공상세도와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 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 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95조에 따르면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호)에 따르면 굴착 완료 후 버팀 부재의 해체·철거는 철거와 해체과정을 단계별로 해석을 실시하여 본체 전체의 안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단계별로 안전한 해체 높이를

59)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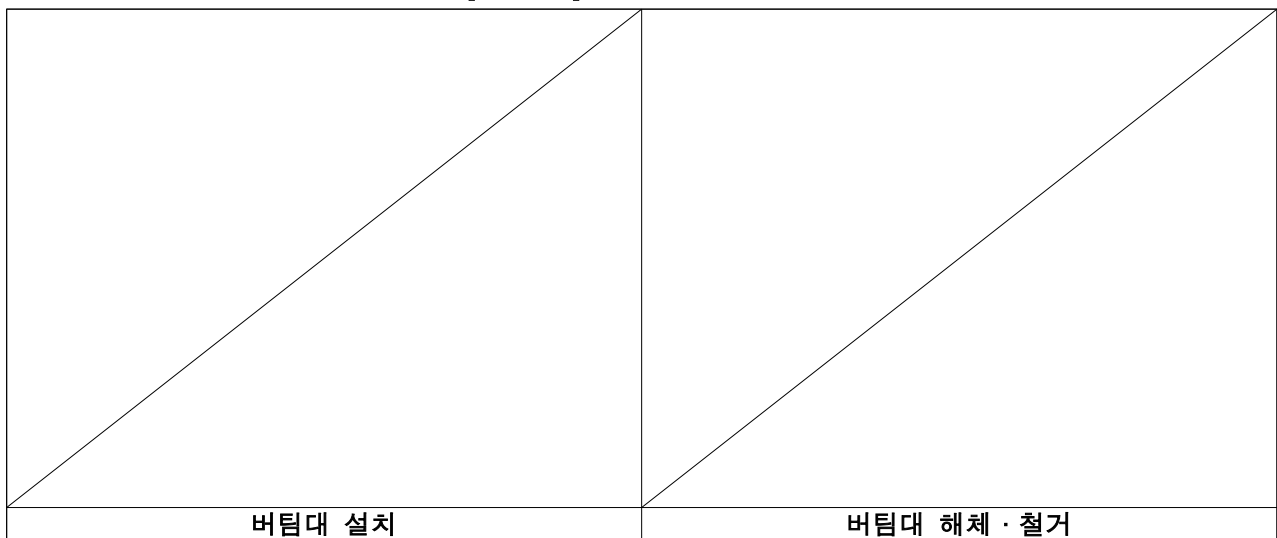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정하여 1단계 되메우기 후, 지반앵커, 버팀대, 띠장 등을 해체하고 다음 단계의 되메우기와 해체작업을 번갈아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 및 관계전문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가설구조물의 해체 시에는 해체과정을 단계별로 해석을 실시하여 본체 전체의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를 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⁶⁰⁾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지하층 터파기 과정에서 지하수 용출로 인한 굴착 사면 붕괴 및 쇄굴 현상을 사유로 쉬트파일 흠막이⁶¹⁾를 설치 하였음에도 버팀대의 해체·철거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성 검토 없이 지하층 벽체 시공을 위하여 버팀대를 해체·철거하였고,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림 1] 가설구조물 설치



60)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 직원

61) 실정보고 승인 : 2022.05.20.

그 결과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 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해당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정산항목에 대한 물가 변동액 반영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정산항목은 아래 [표 7]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하도록 되어 있는 7개 항목은 정산 시 이미 물가상승이 반영되므로 확인된 실적 정산 금액에 물가상승분을 추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표 7] 계약금액의 정산항목 및 규정

정산항목	관 련 법 령
국민건강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국민연금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퇴직공제부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환경보전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위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액을 반영하면서 아래 [표 8]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항목에 대한 물가상승분 8,674천 원 상당을 정산조치 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표 8] 정산항목 물가상승분 반영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물가상승분 반 영 액	정산항목 제외 물가상승분 반 영 액	정산항목 물가상승분 반 영 액	비고
1 회	140,748	132,074	8,674	

* 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정산 소홀로 인한 사업비 8,674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6.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사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에 따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예산 편성목 중 시설비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401-01-04)⁶²⁾, 문화재 발굴경비,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등으로, 자산취득비는 물품정수를 배정받은 물품 구입비, 공관 및 관사운영 물품취득비, 비정수 물품구입비 등으로 구분하여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 내용의

62)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및 동부대시설(예 : 난방,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주시 ◆◆◆◆◆에서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시설비로 집행할 수 없는 물품 구입비는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반영하는 등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된 공정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 [그림 2]와 같이 공사와 관련 없는 물품(S/W 전자기기, 가구 등)은 자산취득비로 집행하여야 하였으나 도금액에 포함하여 시설비로 반영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림 2] 물품 사진대지

A-005		F-023	
F-032		F-039	
키오스크		독서 흥미 유발 (S/W)	

그 결과 물품이 공사 도급액에 재료비로 계상됨에 따라 기타경비 등 제경비 74,774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